제5장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Ⅰ 개요

위원회는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제5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3개 범죄(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과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였다.

Ⅱ 의견조회 대상 기준안

위원회 제77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제13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된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제7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제74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확정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제77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확정된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Ⅲ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1. 의견조회 대상 기관

가.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국회, 대법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헌법재판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

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업통상자원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근로복지공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31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2. 시행 내역

가. 조회 기간

▶ 2017. 1. 18. ~ 2017. 2. 10.

나. 의견 회신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2개 기관이 회신
-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2개 기관이 회신
-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3. 회신의견 종합

가.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1) 법무부

▶ **도주·범인은닉(제정) / 위증 범죄군 양형기준(개정)**

• 설정대상 및 유형분류

▶ 형법의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을 두루 설정대상에 포함시켰고, 특수도주의 경우 일반 도주와의 법정형의 차이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유형분류한 것으로 보임

• 형량범위

▶ 특수도주, 도주원조,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의 경우, 가중구간의 상한이 법정형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죄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경구간의 상한이 가중구간의 하한과 중첩되어 각 영역 구별이 무색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예컨대, 가중구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감경구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이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존재)

(2) 대한변호사협회

▶ 검토의견(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관련)

• 도주범죄 관련하여

- 현행 형법은 제9장에서 도주 및 범인은닉범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으로는 제145조에서 도주·집합명령위반죄를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가중요건으로 ① 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 ② 사람을 폭행·협박,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였을 때를 특수도주의 형태로 가중하고 있음
- 그 외에 도주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도주원조죄와 간수 등 법령상 의무자가 의무에 위반하여 도주원조를 하였을 경우를 신분범의 형태로 가중처벌함
- 기본적 구성요건인 도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1년을 1/2감경한 징역 6월을 기준으로 2개월을 가감한 징역 4월부터 징역 8월의 형을 기본구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일반)감형인자가 존재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특별(일반)가중인자가 존재할 경우는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의 구간은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정한 양형구간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도주 과정에 ① 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 ② 사람을 폭행·협박,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였을 때를 특수도주의 형태로 가중하였는데 위 특수도주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월부터 징역 1년 6월의 구간으로 정하였고, 감경 및 가중 요소의 존부에 따라 감경 및 가중 구간을 설정하였는바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보임
- 다만 특수도주의 한 형태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도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위 특수도주죄의 구성요건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중요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도주범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수도주가 아니라 일반도주죄와 특수폭행(상해)의

경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종범죄간의 양형기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특수도주죄의 또 다른 구성요건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굳이 경합범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이 특수도주죄의 또 다른 형태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임

• 범인은닉범죄 관련하여

- 현행 형법은 제151조에서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과 친족 간의 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즉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형위원회는 범인은닉죄의 기본처단형을 징역 4월부터 징역 1년까지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벌금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특별(일반)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존부에 따라 감경한 구간은 6월 이하의 징역형에, 가중한 구간은 기본구간을 2배인 8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바, 기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져 있는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8월부터 2년까지의 구간으로 설정된 가중 영역은 최고구간에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종의견

- 따라서 도주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그리고 감경 및 가중인자 등을 감안해 볼 때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기본구간 및 감경·가중 구간의 설정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찬성함.
- 다만 범인은닉죄에 있어서는 가중영역에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8월부터 징역 1년 6월로 상한선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나.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1) 대법원

▶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관련

- 통화·유가증권 범죄 양형기준 관련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기죄에서 편취액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듯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서도 부

도 또는 부정 발행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중요한 객관적인 양형인자로 보임에도, 그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움

- 위조된 통화 및 유가증권이 사기 등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 가중인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또는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설명에 통화·유가증권위조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유가증권 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및 '일부 피해 회복' 의 주체 및 상대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유가증권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에서 처벌불원의 주체 또는 피해회복의 상대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해당 유가증권의 진정한 명의인, 거래의 상대방 등 위조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

(2) 법무부

▶ 통화·유가증권 범죄군 양형기준(제정)

•형량범위

▶ 부정수표발행·작성, 수표부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중구간의 상한이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모든 유형에서 감경구간의 상한이 가중구간의 하한과 중첩되어 각 영역 구별이 무색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대한변호사협회

▶ 검토의견

- 현행 형법은 제18장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보면 통화의 위조 등(제207조), 위조통화의 취득(제208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제210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제2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및 예비,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제19장에서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위조 등(제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제215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제216

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 등(제217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제218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219조), 소인말소(221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제222조)을 규율하고 역시 미수범 및 예비,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음

- 통화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을 보면, 국내통화위조죄의 기본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을 기본구간으로 하여 감경영역은 징역1년에서 징역 2년 6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07조 1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처단형의 구간을 위 법정형에 맞추어 더 높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유가증권의 위조 등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정해져 있음
- 유가증권의 위·변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을 보면 징역 6월부터 2년까지를 기본구간으로 정한 후 감경영역은 징역 1년 이하로, 가중영역은 징역1년부터 3년 이하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양형기준은 유가증권 위·변조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
- 부정수표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신고자의 책임(제4조)에 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징역형 대비 벌금액수가 터무니없이 낮게 정해져 있어서 법정형의 개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을 보면 부정수표발행, 작성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1년 6월을 기본구간으로 하여 감경영역은 징역 1년 이하, 가중영역은 징역 1년부터 3년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을 기본영역으로 하여 감경영역은 1년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 1년부터 4년 이하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법정형을 보면 허위신고죄가 부정수표발행, 작성죄에 비하여 장기형이 2배 높게 정해져 있는 반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처단형의 기본영역은 장기형에 있어서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으로 커다란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차이를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죄의 처단형의 기본구간 하한선을 징역 6월에서 징역 10월 또는 징역 1년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최종 의견

-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최종유형분류는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통화위·변조죄와 관련하여 기본처단형의 권고영역을 양형위원회가 정한 '징역 1년 6월-징역 3년' 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 2년-징역 4년으로 규정하고 위 기본구간을 중심으로 감경 및 가중 영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함
- 또한 유가증권의 위·변조죄와 수표의 위·변조죄와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정함
- 다만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죄와 허위신고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죄의 처단형의 기본구간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보다 상향조정하여 징역 10월-징역 1년으로 설정함이 상당함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유가증권관련 등 위반 범죄 관련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에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단,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경우 어떤 인자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집행유예만 규정되어 있어 그 부분이 적절한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1) 법무부

▶ 대부업법위반 범죄군 양형기준(제정)

- 형량범위

▶ 통계상 실형 선고된 대부업법위반 사건 가운데 징역 6월 이상이 선고된 사건의 비율이 90%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업법위반에 관한 기본영역의 하한이 다소 낮음

▶ 채권추심법위반의 경우, 반복적·야간방문, 전화 등 행위 유형은 감경구간의 상한이

가중구간의 하한과 중첩되어 각 영역 구별이 무색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 검토의견

-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약칭)에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처벌규정은 이자율제한위반(법제19조2항 3호)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미등록대부업은 제19조 1항 1호 위반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처단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부터 10월의 구간이며, 감경영역은 8월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 8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한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규정 가운데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범법행위는 반복적인 야간추심 등(제15조 2항 2호)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폭행·협박 등의 행위(제15조 1항)위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보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의 죄에 대해서는 처단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4월-10월로 정하고 감경영역은 6월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 6월-2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폭행·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처단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6월-1년 6월로 정한 후 감경영역은 8월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 10월-징역 3년 6월로 정하고 있음
- 대부업법위반의 경우 이자율제한위반죄의 법정형과 미등록대부업의 법정형을 비교하였을 때 미등록대부업의 처단형의 기본영역 하한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하한선을 징역 6월에서 징역 8월 정도로 상향조정함이 상당함
- 또한 채권추심법 상 법정형의 장단기와 서민경제에 대한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비교하였을 때 폭행·협박 등 행위에 대한 처단형의 기본영역 하한선이 너무 단기형으로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하한선의 양형을 징역 6월에서 8월 내지 10월로 상향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최종유형분류

-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최종유형분류는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대부업법위반의 미등록대부업의 기본영역의 하한선을 징역 6월에서 징역 8월로 상향조정하고, 채권추심법에서 폭행·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본영역의 하한선을 징역 6월에서 징역 8월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이 합당함

Ⅳ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 위증 · 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1. 의견조회 대상 기관

가.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국회, 대법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안전행정부, 헌법재판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28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국회, 대법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안전행정부, 조달청, 헌법재판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27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다.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국회, 대법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1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라.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국회, 대법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헌법재판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업통상자원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26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2. 시행 내역

가. 조회 기간

▶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2016. 4. 19. ~ 2016. 5. 18.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016. 9. 8. ~ 2016. 10. 7.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017. 1. 11. ~ 2017. 2. 10.

나. 의견 회신

▶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28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7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여연대

▶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1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2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6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 회신의견 종합

가.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1) 대법원

▶ 절도범죄

• 상습절도(포괄일죄)에 대한 처리 기준 명확화 필요

- 상습절도는 다수의 범죄가 포괄일죄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상습절도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가 함께 있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에서도 대인절도, 침입절도가 함께 있는 경우 등)의 처리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경우, 권고형이 가장 중한 유형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는 식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상습절도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 중 일부의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수 개의 절도범죄가 1개의 상습절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 중 1개의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4]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50개의 절도범죄 중 1개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와 '2개의 절도범죄 중 1개의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를 달리 볼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 반복" 의 이중 평가

-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범행 수법의 유사성은 상습성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 중 하나임
- 그렇다면 "상습범인 경우" 를 일단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고,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 를 또다시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상습성이라는

4)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의 침입, 흉기 휴대, 야간손괴주거침입,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

요소를 이중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많은 경우 특별가중영역(가중영역 권고형의 상한을 1/2 가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거나, 1개의 특별감경인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①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②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를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음(현재는 특수한 수법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절도죄의 양형기준이 다른 양형기준, 특히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비하여 다소 높음
- 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사기죄의 양형기준 보다 다소 높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근거
  - ▶ 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피해액 1억 ~ 5억 원 미만의 기본형은 1년 ~ 4년이고,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1억 ~ 5억 원 미만의 기본형은 2년 ~ 5년임
  -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양형기준 중 누범절도(1유형)의 기본형은 1년 6월 ~ 3년이고, 절도 과정에서 도구 등을 사용한 경우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2년 6월 ~ 4년임
  - ▶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1억 ~ 5억 원에 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입는 고통도 사기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장물범죄 양형기준

- 절도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① 상습장물범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각기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② 개개의 범죄 중 일부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 수정안 주요 내용

- 2016. 4. 18. 제72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절도 및 장물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를 일부 조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경을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하며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등 양형기준을 수정하였음
  - ▶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 일부 조정
  - ▶ 형량범위 일부 수정
  - ▶ 양형인자 일부 수정

▶ 검토의견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 일부 조정(절도, 장물) : 찬성

- 수정안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2. 26. 선고 2014헌가16)을 반영한 것으로 찬성함
- 절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9조 제2항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을 포함시킨 것은 관련 법령의 삭제와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반영한 것이므로 찬성의견

•형량범위 일부 수정 : 찬성

- 장물범죄의 경우 수정안의 요지는 종전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의 권고형량 범위에 준하여 누범장물 형량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정형 및 일반재산에 대한 범죄와의 균형 등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찬성함
- 절도범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절도의 형량을 법정형이 각각 2년 이상(유형 1), 3년 이상(유형 2)인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위험과 비난가능성 등을 양형범위에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찬성함

•법정형 변경을 반영한 유형 분류 조정 및 서술식 양형기준 삭제 : 찬성

- 유형 분류의 경우 변경된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인 범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 유형으로 재분류한 것이고, 서술형 삭제의 경우 법정형 변경 후 유형2에 포섭되고 그 외 부분은 삭제된 부분을 적절히 고려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

•양형인자의 일부 수정 : 찬성

- 절도, 장물범죄의 경우 상습범 부분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형법과의 법정형 차이 및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 전체 체계를 고려한 타당한 변경으로 보임
- 특수한 수법 등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가중인자로 고려할 필요성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보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의 가중요소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감경요소인 점과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3) 법무부

▶ 절도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 내용 및 검토의견

- 특가법상 절도 유형의 형량범위 상향 필요

▶ (수정안) 수정안은 절도 범죄군 중 특가법상 절도 유형을 새로운 유형으로 조정·분류하고 형량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2년6월~4년~~ 1년~2년6월	~~3년~5년~~ 1년6월~3년	~~4년~7년~~ 2년6월~4년
2	상습누범절도	~~2년3월~6년~~ 1년6월~3년	~~3년~7년6월~~ 2년~4년	~~4년6월~10년6월~~ 3년~6년

▶ 1유형은 5인 이상의 공동·상습절도(특가법 제5조의4 제2항), 3회 이상의 징역형 이후 누범절도(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경우(법정형 징역 2년~20년),

▶ 2유형은 2회 이상의 상습절도 실형 후 상습누범(같은 조 제6항)의 경우(법정형 징역 3년~25년)

▶ (검토) 수정안의 형량범위는 가중영역의 상한이 각 4년, 6년으로 특별조정하더라도 상한이 6년, 9년에 불과하여 법정형에 비하여 과경

※ 수정안의 형량범위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의 변경(무기 또는 3년·5년 이상의 징역 → 징역 2년 ~ 20년 또는 징역 3년 ~ 25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별도로 양형기준을 규정할 필요

▶ (수정안)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

▶ (검토) 상습범(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포함)을 특별가중인자로만 규정하면 특별조정하더라도 상한이 유형별로 9월 내지 9년으로 법정형에 비해 과경하여 별도 양형기준으로 규정할 필요

※ 일반절도의 상습범은 9년 이하의 징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상습범은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의 상습범은 징역 1년 ~ 15년으로 수정안의 형량범위와 큰 차이

- 일반양형인자인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할 필요

▶ (수정안) 일반재산 및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서 특수절도의 구성요건 중 '흉기휴대' 는 '특별양형인자' 로, '2인 이상 합동' 은 '일반양형인자' 로 반영

▶ (검토) 두 유형의 절도는 법정형이 동일하고 '2인 이상 합동' 과 '흉기휴대' 의 위험성

이 상이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두 양형인자를 동일하게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함이 상당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흉기를 휴대한 경우(4유형)' 의 문제점

▶ (수정안)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중 '흉기휴대' 를 가중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침입절도에 한정

▶ (문제점) 방치물 등 절도(1유형), 일반절도(2유형), 대인절도(3유형)를 불문하고 흉기휴대 범행은 위험성의 증대로 인해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에 가중인자로 규정함이 상당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와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관련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는 상습범인 경우와 상습범이 아닌 경우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로서 이를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현행 수정안		수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장물범죄군의 경우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의 양형인자에서 상습범을 제외하지 않음

▶ 장물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 내용 및 의견

- 누범장물 유형의 형량범위 상향 필요

▶(수정안) 특가법상 누범장물 범행에 아래와 같이 형량범위를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장물	~~1년6월-3년~~ 1년-2년	~~2년-4년~~ 1년6월-3년	~~3년-6년~~ 2년-4년

▶ (검토) 수정안은 법정형(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범위가 과경하고 특히, 절도 범죄군 중 특가법상 절도의 제1유형과 법정형이 동일(2년~20년)함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형량범위가 상이

-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별도로 양형기준을 규정할 필요

▶ 형법상 상습 장물범에 대하여 특별가중인자로만 설정하면 가중영역의 상한이 징역 4년이고 특별조정 을 하더라도 상한이 6년에 불과하여 법정형(징역 1년 ~ 10년)에 비하여 과경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형기준안의 개요(절도범죄)

- 절도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그리고 특수절도(제331조)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특히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의 개정(2016년 1월 6일)을 양형기준안에 반영함
- 동법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2항을 삭제한 것을 양형기준안에 반영함

▶ 검토의견

- 일반재산의 절도의 특별양형인자에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는 이유서에 따르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와 중복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상습범인 경우에만 고려하도록 하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에는 상습범인 경우를 제외한 것이라고 함(6면)
- 그런데 "특수한 수법, 도구" 를 이용한 경우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제4유형)" 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아니면 그러한 경우는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만약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5) 헌법재판소 2015.2.26. 2014헌가16·19·23(병합)):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침입(제4유형)" 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수법, 도구" 를 이용한 경우가 존재한다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게 되는데(마찬가지로 일반양형인자에서도 고려되지 않음) 이것을 의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양형기준 -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양형기준안은 2016년 1월 6일 절도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한 특가법 개정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 우선 특가법상 절도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삭제로 양형기준 "3. 상습·누범절도" 에서 제1유형인 "일반상습·누범절도" 를 삭제하는 한편 표제를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로 개정하고 그 유형도 새로이 "1. 공동상습·누범절도" 와 "상습누범절도" 로 구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또한 제3형종의 기본형량을 하향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형종(3.)이 변경됨에 따라 "1. 일반재판에 대한 절도" 와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에서 상습범을 특별양형인자("행위" · "행위자/기타")로 반영하여 상습범에 대한 중한 가벌성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사료됨
- 유형의 정의 -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종전에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해당하던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와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 를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종전에 제2유형에 규정하던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2항" 에서 "또는 제9조 제2항" 을 삭제한 것은 특가법 제9조 제2조를 삭제한 것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됨

▶ 종합의견

- 절도범죄 양형기준안은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지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양형기준안의 개요(장물범죄)

▶ 검토 의견

- 장물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

법" 이라 한다) 제5조의4 제4항이 2016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장물범죄 양형기준에서 대상범죄 형법 제363조에 정한 상습장물을 포함시키고 장물범죄의 상습범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가법상 상습장물죄의 삭제에 따라 누범장물의 형량을 하향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 대법원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

- 수정안에서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에 해당할 경우 이를 특별가중인자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실무상 공무집행방해범죄의 대부분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수사, 치안유지는 경찰관 직무수행의 기본적·일반적인 목적인 점, 112신고에 의한 출동 임무는 그 자체로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위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특별가중인자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를 정한 것은 결과불법이 중한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특별가중인자에 결과불법적 요소를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예컨대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한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급박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는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계획적 범행

- 일반가중요소 중 계획적 범행에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현행 양형기준 상 살인죄, 성범죄, 강도범죄 등에도 일반가중요소로 '계획적 범행' 을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추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계획적 범행' 에 위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위 추가 사항은 '계획적 범행' 의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집회 및 시위 참가자가 복면을 쓰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심리가 향후 담당 재판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추가하더라도 양형인자 정의 부분 표현은 신중하여야 함

  ▶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무효, 파괴 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사유 중,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부분이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무효, 파괴죄 재판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복면시위참가자들 중엔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무효, 파괴 의도가 아닌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복면을 하는 경우가 많음(예: 최근 이대생들 집회, 시위). 또한 집회, 시위 과정 중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 무효, 파괴 범죄는 우연적으로 경찰과 대치, 충돌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위 양형인자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요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집회, 시위에 참가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문장을,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신원확인 회피를 위해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대한변호사협회

▶ 수정안 주요 내용

- 2016. 9. 5. 제7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됨

- 위 수정안은 1) 권고 형량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3)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등 양형인자를 수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 검토의견 : 찬성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형 조정

- 그동안의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기본형인 '6월 ~ 1년 4월' 에서 '1년 4월' 은 형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어색한 측면이 있었던바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찬성함. 또한 특수공무방해치상의 가중영역을 상향조정한 부분도 찬성함

• 양형인자 수정

- 감경요소에 '폭행, 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를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찬성함
- 또한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를 삭제하고,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함
- 특별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특별히 추가되어도 무방하므로 찬성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위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함
-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 정의 수정 부분도 찬성함

(3) 법무부

▶ 수정안 주요내용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기본영역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각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 1년6월	1년 - 4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7년

- 감경인자 수정사항

▶ 특별감경인자에 '공무방해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를 추가하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를 신설

- 가중인자 수정사항

▶ 특별가중인자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신설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에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범행한 경우' 를 추가

▶ 일반가중인자 중 '계획적 범행' 에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단,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닌 경우 제외)' 를 추가

▶ 검토의견

• 형량범위 관련

- 수정안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기본영역' 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가중영역' 의 형량범위만 각각 2월, 1년 상향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형량범위도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추가 상향 필요

•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법정형은 1유형이 7년 이하의 징역, 2유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법정형은 1유형이 3년 이상의 징역, 2유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히, '공용물무효·파괴 중 공용물파괴 유형'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 은 기본영역의 하한이 법정형 보다 낮아 상향할 필요

• 가중인자 중 '계획적 범행' 의 하나인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단,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닌 경우 제외)' 관련

- 일반양형인자가 아닌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필요

▶ 복면을 착용하고 범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인자로 판단됨

▶ 그러나 '복면 착용 범행' 은 '계획적 범행' 의 다른 경우인 '범행 도구의 사전준비' , '사

전공모',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등과는 차이가 있어 계획적 범행의 하나로 보기에는 부적절

▶ 복면 착용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익명성으로 인해 범행이 과격화되거나 폭력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계획적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이유와 차이가 있어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 용어의 문제

▶ 위 인자는 '복면을 착용하고 범행한 경우' 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신원확인 회피 목적', '신체 일부' 라는 표현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복면' 이라는 사전적으로 명확한 표현을 대체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명확한 표현인 '복면을 착용하고 범행한 경우' 로 수정 필요

▶ 아울러, 수정안은 괄호에 "(단,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를 부기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는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표현에 불과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 필요

※ 복면 착용에 공무집행방해 의도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 라는 내심의 의사까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 주범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

▶ 현행 양형기준에는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양형에 차이를 주는 인자로 '소극가담' 을 규정하는 반면 주범의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인자가 없음

▶ 한편,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 「업무방해」 범죄군에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를 두고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달리할 수 있도록 주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양형인자 추가 필요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정안의 주요내용

• 수정의 취지

- 2011년 7월 공무집해방해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실무 변화를 반영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함

• 주요 내용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죄 기본형량범위 상한 상향조정. (6월 - 1년4월 → 6월 - 1년6월)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감경 및 가중요소 변경
- 양형인자(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정의 수정
-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 또는 감경 기준 신설

▶ 검토 의견

• 수정내용의 검토 : 가중 및 감경요소와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변경

- 공무집행방해

▶ 특별감경요소

현행	수정
▶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감경요소로서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함. 판례상 적법하지 아니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치 아니하므로 현행 양형기준상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공무집행 행위측면을 직접적인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하기 보다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측면으로 대체함으로써, 양형법관의 합리적 양형판단 도출에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가중요소

현행	수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현행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양형인자 추가로 판단됨

- 공용물 무효·파괴

▶ 특별감경요소

현행	수정
▶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함

▶ 특별가중요소

현행	수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별감경요소

현행	수정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2유형)

▶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함

▶ 특별가중요소

현행	수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함

• 수정내용의 검토 : 양형인자 정의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현행	수정
없음.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현행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의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본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신설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역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거나,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낮은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공익 또는 타인 권익실현이 주된 목적인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에 상응하여 정의된 것으로 판단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현행	수정
없음.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현행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본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신설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역시 업무방해죄 해당 양형인자에 상응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로 정의된 것으로 판단됨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현행	수정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현행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의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는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

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함. 본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인자 역시 업무방해죄 해당 양형인자에 상응하여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로 정의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인명구조,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또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로 포함시키고 있는 바 긴급임무 수행의 방해가 언제나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본 수정안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여 중복평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계획적 범행

현행	수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얼굴 등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등)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본 수정안은 기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무효파괴죄 일반가중인자로서 '계획된 범행' 정의에서 '증거인멸의 준비' 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서 '얼굴 등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를 규정하였음. 그 정의 취지는 최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서 이른바 복면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됨. 이는 집회시위 자유보장과 관련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좀더 거쳐야 할 사안인 바, 가중인자로서 정의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내용의 검토 : 만취상태 범행에 대한 가중 및 감경 기준 신설

- 신설안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현행 양형기준에 있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행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은 2010년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살인죄 양형기준에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 동일 내용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유사한 유형으로 폭력범죄(일반상해, 중상해, 보복목적상해,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 양형기준과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특성이 살인죄, 성범죄 보다는 폭력범죄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은 폭력범죄 기준 유형에 따르는 수정안이 타당할 것임

▶ 종합의견

- 현행 판례상 적법하지 아니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치 아니하므로 현행 양형기준과 같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직접적인 특별감경요소

로 인정하기 보다는, 본 수정안과 같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로 대체함으로써, 양형법관의 합리적 양형판단 도출에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수정안에서 적절한 양형인자 추가로 판단됨
- 본 수정안에 따르면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또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긴급임무 수행의 방해가 언제나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본 수정안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여 중복평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수정안은 기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무효파괴죄 일반가중인자로서 '계획된 범행' 정의에서 '증거인멸의 준비' 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추가하면서 '얼굴 등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를 내용에 포함하였음. 그 취지는 최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서 이른바 복면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됨. 이는 집회시위 자유보장과 관련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좀더 거쳐야 할 사안인 바, 가중인자로서 정의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특성이 살인죄, 성범죄 보다는 폭력범죄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은 폭력범죄 기준 유형에 따라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은 제외한 수정안이 타당할 것임

(5) 참여연대

▶ 요약

• 본 보고서는 2016년 10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된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입니다.

- 지난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정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를 추가하는 것

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반대하고 철회 의견을 제시함.

▶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 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실질적인 대체입법임

▶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의 양형인자 정의 수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은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 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의 양형인자 정의 수정에 반대함: 양형위원회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뿐 아니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

-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구성요건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행위임. "계획적인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지표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혹은 그것을 지향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 범행도구를 준비하거나 사전공모, 피해자 유인 등은 물론, 증거인멸의 준비나 도주계획의 수립과 같은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실행양태이거나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반면,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귀찮게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을 피하기 위하거나 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목적 혹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음. 이는 집회·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평판의 훼손 또는 그 주장에 대한 반대자들이 야기할 지도 모르는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도 포함됨[6]

▶ 물론 그것이 체포를 피하기 위한 도주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에 해당함. 오히려 그때그때 사안별로 신원확인회피목적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넓은 의미에서 "증거인멸의 준비"

6) 이란 유학생들의 반팔레비 시위에서 대학본부측이 복면금지를 명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한 Aryan v. Mackey, 462 F. Supp. 90(N.D. Tex. 1978)은 이의 대표적인 예임. 그럼에도 수정안은 이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여 양형가중요소의 판단지표로 삼겠다는 것임.

에 상당한 것으로 처리하면 충분할 것임[7]

-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시위에 냉각효과를 야기함

▶ 현재의 경찰이 대규모의 대중 집회를 관리하는 행태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음

▶ 특히, 대규모 대중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금지처분과 강제해산조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듦

▶ 자신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구타하고 감금하며, 체포하고 의율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참가자들의 통제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의 집회·시위방해 행위와 맞물리면서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양형의 가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 그러나 신체의 일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무분별한 채증행위의 대상으로 전락함을 의미하게 되고, 또 그에 이어 수많은 형사적, 민사적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결국 시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큼

▶ 결과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실태가 사실상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이 상황을 오로지 공무집행방해의 범주로만 포섭하고 거기에 신원확인회피목적의 행위들을 양형인자를 해석하는 필요적 지표로 특정하는 수정안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7) 영국이 수정안과 같은 인자를 강도죄의 양형인자에 반영하는 방식은 이 점에서 참조할 만 함. 영국은 강도죄(robbery)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가중요소(aggravating factors particularly relevant to robbery)를 거론하면서 "강도의 죄를 범하기 위하여 가면을 착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범죄인의 측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음을 가리킨다" (The wearing of a disguise in order to commit an offence of robbery usually indicate a degree of planning on the part of the offender.)라고 함. 즉,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가 반드시 범행의 계획성을 판단하는 필수요소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계획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침 정도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와 범죄의 계획성의 관계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 Sentencing Guideline Council, "Robbery: Definitive Guidelines," in: http://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web_robbery-guidelines.pdf

야기할 것임[8]

▶ 헌법재판소의 결정[9] 이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듯,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정안은 집회참가자의 복장을 양형가중이라는 방식으로 통제함으로써 헌재가 확인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게 됨[10]

▶ 실제, 미국 등에서 복면금지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는 주된 원인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 집회·시위자들이 착용하는 복면은 신원은닉의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정한 의사의 표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는 복면과 같은 상징적 수단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엄격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헌무효로 선언하고 있음

▶ 수정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양형기준요소의 해석기준을 새롭게 신설, 추가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집회·결사의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수정안은 비록 양형기준으로 법관의 해석을 거친다고 하나, 신원 "확인", "회피" "목적" "신체일부" "가리고" "의도" 등과 같은 불명확개념을 사용하여 가중인자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검찰의 기소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한편, 법관의 재량까지도 지나치게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

8) 이는 미국의 다양한 법원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사실임. Tally v. California, 362 U.S. 60(1960); Buckley v Valeo, 424 .S. 1(1976) ;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514 U.S. 334(1993)등. 그 외에도 위의 City of Goshen 사건 참조.

9)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0헌바67등

10) 이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9. 국회의 복면착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2.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위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역시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는 결정[2003. 10. 30. 2000헌바67, 83(병합)] 취지에 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할 우려가 있음

▶ 실제 집회나 시위에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참가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확인" 되는 것을 어떻게 "회피" 하는 것인지 법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경찰의 채증행위 혹은 교통행정목적의 CCTV로부터의 회피인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시선으로부터의 회피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더불어 "신체일부" 는 안면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아니면 안면 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가리키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가리고" 의 의미 또한 어느 정도로 시선을 차단하여야 "가리" 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음. 예컨대, 착색된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그 농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그에 해당할 것이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경찰, 법관, 혹은 그 착용자-를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 모두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음

▶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의 의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는 차단된다고 보고 있음[11].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 를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인자로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집회의 시위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함

▶ 현행 양형기준의 '계획적 범행' 의 양형인자에 관한 정의에는 명시적 '신원확인회피' 라는 정의가 없이 여러가지를 나열하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만 되어 있음. 현재의 양형기준에 의해서도 복면을 착용하였을 경우, 법관은 실무재판에서 신원확인회피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음. 만일 복면상태에서 공부집행방해행위가 더 과격해졌다면 그 과격해진 행위를 가중양형사유로 보면 되는 것임. 따라서 명시적 항목으로 신설하지 않아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현행의 기준을 수정할 명분은 없음

▶ 또한 "목적" "의도" 등의 제한요소들도 그것이 적극적, 의지적 지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미필적 목적이나 범죄의 인식이 있는 경우 등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우리 법원의 선례에 비추어보면, 집회시위에 참가하려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동지침이 되지 못함.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여야 하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이 기준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11)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실 제공 양형위원회 제74차 회의록 3페이지 참고.

방법은 없음. 오히려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준의 소환조사를 일삼고 있는 현재의 경찰·검찰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 수정안 자체가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어 경찰·검찰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내세운 경찰의 소환조사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사회적 항의가 적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수정안은 국민들 특히 집회·시위의 참가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함. 물론 이는 예상되는 최악의 효과이긴 하지만 이런 최악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입법의 위헌성이나 무효화를 선언하는 경우(소위 미끄러운 언덕 이론slippery slope theory)는 적지 않음[12]

-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 수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인권침해의 우려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강고한 반대에 부딪혀 심의조차 되지 못하다 국회임기의 만료로 폐기된 소위 '복면금지법안'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92)의 내용을 양형기준의 형식으로 변경하여 법률 외적인 방법으로 규율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수정안은 식별, 신원확인 등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는 것을 '법적' 으로 무가치한(즉, 악한)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실상의) 신원확인요구에 복종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양형기준이라는 틀을 통해 사실상 새롭게 설정하고 또 이를 가중된 형벌로 강제하는 것임

▶ 즉, 이 수정안은 새로운 행위통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의회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임에도 그것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실질적인 대체입법과 다르지 않음

▶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우회입법 또는 편법적인 의무 설정은 법(률)에 의한 지배 혹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회유보의 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음

-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

12) 어떤 국가규제에 있어 최악효과의 발생가능성은 언제나 최상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 해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E. Lode, "Slippery Slope Argument and Legal Reasoning," 87 Cal. L. Rev. 1469(1999) 참조.

합성에도 어긋남

▶ 수정안이 다른 범죄가 아닌 집회와 시위와 관련성이 높은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신원확인회피목적의 행위를 양형가중요소에 삽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중시킴.

▶ 신원을 은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해진 범죄가 비난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임. 하지만 복면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의 불법성을 중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며 다른 범죄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비난가능성을 가지거나 혹은 강도나 성폭행범죄의 경우처럼 그보다 더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유독 공무집방해 범죄군에만 적용하려고 함

▶ 실제 어떠한 범죄에서도 신원확인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를 양형인자화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없음. 그럼에도 오로지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에 대해서만 이런 인자요소를 신설하여 삽입함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뿐 아니라 체계정합성의 요청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정안의 숨은 목적, 즉 집회·시위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통제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만듦

-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수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원확인을 회피" 하거나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함. 따라서 그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명시적 유보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을 뿐임

▶ 어떠한 국민도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신원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공무원에 대해서까지도 드러내어야 할 의무는 없음. 특히 우리의 형사법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물론 범죄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범죄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자신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야 할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수정안은 신원확인 등을 회피하는 것을 일괄하여 '법적' 으로 의미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는 이를 형벌의 필요적 가중요소로 삼고자 함. 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의무를 양형기준이라는 틀을 통해 사실상 새롭게 설정하고 또 이를 가중 사유로 처벌하는 것임

▶ 실제 현재처럼 고도로 발전한 안면 인식 기술 등의 IT기술을 감안할 때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다닐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원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임. 그럼에도 수정안처럼 신원 은닉 행위를 양형 가중 인자로 구성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이 가중 인자의 적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안면정보, 신체정보를 반드시 노출하여야 한다는 당위에 봉착하게 됨. 공무를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를 만나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복면이나 변장 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임

▶ 물론 목적이나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건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요건들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부담은 온전히 이 개개인들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과도함

▶ 결국 수정안은 관련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행위양태로 포섭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행위(신분확인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에 대하여 무가치판단을 내리고 공무의 집행에 즈음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들은 잠재적인 공무집행방해자일 수 있다-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나 확인시킬 수 있는 상태로 노출할 것을 강제함.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결국 국가로부터 자신의 신원을 제출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하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결론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양형기준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 의 정의에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라는 요소를 신설 하는 것은,

▶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 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

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실질적인 대체입법임

▶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함

다. 위증·증거인멸

(1) 대법원

▶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의 세부 설명을 명확히 하자는 견해가 있음

위증죄 양형기준	증거인멸죄 양형기준
다.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증거인멸죄의 경우 위증과는 달리 '재판절차' 가 아닌 '수사단계' 의 기소·불기소 처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세부 설명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현의 수정

▶ 위증죄의 '양형인자의 정의' 중 '라. 자수·자백' 부분에서 '공술' 이라는 표현보다는 '증언'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 검토의견(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 현행 형법은 제10장에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 역시 위증과 모해위증, 증거인멸의 경우도 모해목적의 증거인멸을 가중 처벌하되 그 법정형 역시 위증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양형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위증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증거인멸죄와 모해목적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위증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설정하였는바, 우리 형법이 위증과 증거인멸을 같은 장에게 규율하고 있는 점, 보호법익 역시 국가기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모해목적이 부가된 구성요건에 있어서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증죄에 대하여 적용할 양형기준을 증거인멸의 경

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됨

▶ 최종의견

-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최종유형분류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라.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 대법원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수정안에서 양형기준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보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예컨대, 종래 산업비밀보호법상 국외침해행위의 양형기준(기본영역)은 '1년 ~ 3년' 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양형기준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보게 되어 양형기준(가중영역)이 '2년 ~ 6년' 이 됨 → 법정형 상향 정도에 비하여 양형기준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으로 보임

  ▶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경우(영업비밀 중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만을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있음)와 마찬가지로 산업비밀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에 관한 범행만을 특별가중인자로 보는 방안, 또는 ② 특별가중인자에서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삭제하고 상향조정된 양형기준 형량범위 내에서 법정형 상향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

▶ 지식재산권 범죄군 양형기준(개정)

• 양형기준 수정사항

- 형량범위 상향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2년	1년 – 3년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3년 3년6월	2년 – 5년 6년

- 특별가중인자 추가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국가 지정·고시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집행유예 선고 기준 추가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행' 및 위 추가한 특별가중인자 2개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

• 검토의견

- 유형분류 관련

▶ 위 유형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종전에 위 각 침해행위의 법정형이 같았으나(국외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국내침해 5년 이하의 징역),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국외침해 15년 이하의 징역, 국내침해 7년 이하의 징역)되었음

▶ 양형기준 수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양형인자 추가만으로는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불충분함

▶ 따라서 유형자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형량범위 관련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수정안은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각 상한의 상향에만 그침

▶ 더구나 상향의 폭도 법정형의 상향 폭에 비추어 비교적 낮은 수준임

▶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자의 의사는 기존의 법원의 낮은 선고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임에도 기본영역·가중영역의 각 상한만을 상향한 수정안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한편,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각 상한만을 상향시킴으로써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취지와 재판 과정에서의 규범력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각 영역의 폭이 넓어져 법원의 양형 재량을 지나치게 넓히고 이로 인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각 하한의 상향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개정 취지에 맞게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에 대한 검토서

개 정 안	검토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1 국내침해 가중 : 1년 – 4년 유형2 국외침해 가중 : 2년 – 6년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Ⅱ.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1 국내침해 가중 : 2년 – 6년 유형2 국외침해 가중 : 3년 – 10년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Ⅱ.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최근 해외 기술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 현황(국정원) : ('12) 30건 → (' 15) 51건 –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유출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해당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산업기반 붕괴 위험이 있음 ▶ 반면, 양형기준 개정안은 국내주요 경제범죄 양형기준 및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술유출 사범의 경우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자료 참조

▶ 참고1 : 〈산업기술 유출현황〉

•(건수) 첨단기술 해외유출 건수가 최근 지속적 증가 추세 ('10년 41→ '15년 51)

〈 첨단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국정원) 〉

구 분	'10	'11	'12	'13	'14	'15
첨단기술	41	46	30	49	63	51

〈 연도별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경찰청) 〉

구 분	'10	'11	'12	'13	'14	'15
총 계(건)	40	84	140	97	111	98
국내유출(건)	35	74	121	81	99	86
해외유출(건)	5	10	19	16	12	12

• (분야) 과거 대기업· IT 분야 중심에서 최근 중소기업·정밀기계까지 확대

* 유출대상은 중소기업 64%, 대기업 16%, 기타 공공연구기관 등이 20% 차지

〈 업종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10~ '15년, 229건, 국정원)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25.7	12.5	32.8	3.6	6.1	19.3	100%

• (경로)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인력에 의한 유출이 약 80% 차지

* 기술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78%), 인사·처우 불만(13%) 등

〈 '10~ '15년도 해외유출 적발 시행주체별 현황 (국정원) 〉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기 타	계
51.1	27.1	6.4	0.4	15	100%

최근 산업기술 유출 주요사례

(사례1)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前직원 등이 범퍼도면 등 설계도면 200여건 불법유출하여 中업체가 발주한 신차 개발에 활용 및 중국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한 혐의로 구속('15. 7)

* 유출도면이 중국신차 생산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3년간 영업상 피해액 700억원대 추산

(사례2) 현대중공업은 힘센엔진*의 유사부품이 국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 ('15.8), 기술유출 사범 불구속입건('16.6)

* 4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선박용 엔진(총 9,000여대 생산, 40여개국 수출)

▶ 참고2 : 〈양형기준의 적정성 검토〉

• 국내의 주요 경제범죄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 횡령·배임범죄 〉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법정형*
1	1억 미만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5년 이하, 10년 이하
2	1억 이상~5억 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3	5억 이상~50억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3년 이상
4	50억 이상~300억 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무기 또는 5년 이상
5	300억 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 특가법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증권범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법정형*
1	1억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10년 이하
2	1억 이상~5억 미만	1–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3	5억 이상~50억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년 이상
4	50억 이상~300억 미만	3년~6년	5년~9년	7년~11년	무기 또는 5년 이상
5	300억 이상	5년~9년	7년~11년	9년~15년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법정형*
1	1천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5년 이하
2	1천만원~3천만원	8월~2년	1년~3년	2년~4년	
3	3천만원~5천만원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년 이상
4	5천만원~1억원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7년 이상
5	1억원~5억원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무기 또는 10년 이상
6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이상	

* 특가법 제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 제5조 제4항
– 수수액 3천만원~5천만원 : 5년 이상, 5천만원~1억원 : 7년 이상, 1억이상 :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기술침해범죄 법정형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적용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영비법)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산기법)	경제스파이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 영비법 : (국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기법 : (국외)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국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	● 국외 : (개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불 이하 벌금, (법인) 1천만불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불 이하 벌금, (법인) 500만불 이하 벌금	● 국외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10억엔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5억엔 이하 벌금

• 국내와 미국의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실제 양형 비교

〈 영업비밀·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 현황 (출처 : 대법원) 〉

년도	유기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계
2014	24명	41명	34명	2명	18명	122명
2013	7명	31명	30명	4명	20명	94명
2012	18명	51명	46명	2명	36명	155명

〈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피고인 양형('96~ '12) (출처 : 법제연구원) 〉

양형	피고인 수(해외유출)	피고인 수(국내유출)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0	27
자택연금	0	4
0~6개월 징역	1	7
6~18개월 징역	0	13
19~36개월 징역	1	17
37~54개월 징역	0	5
55~95개월 징역	1	6
96개월 이상 징역	1(188개월)	1(96개월)

(4) 대한변호사협회

▶ 검토의견

-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2017. 1. 4. 제77차 양형위원회에서 기존의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수정한 내용은 ①권고형량의 범위를 조정 ②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한 것임
- 결과적으로 위 양형기준은 기존에 설정된 양형기준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위에서 적시한 일부 권고형량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한 것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수정한 양형기준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2016. 6. 30.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소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한 행위' 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 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에 대해서는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형기준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위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더 높이고 이를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양형기준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최종의견

- 양형위원회에서 수정한 양형기준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검토 의견

- 산업기술 유출 범죄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 등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17.1월 의결) 강화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검토의견 정리
- 산업기술 유출·침해관련 범죄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하여 지난 '17.1월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 개정안 보다 강화한 양형기준안 마련이 필요

▶ 그간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첨단기술의 국내, 해외유출에 따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또한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침해 기법도 다양화 및 지능화 추세

* 특히, 기술침해는 70%이상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시도되고 아울러 주변국의 국가적 자원의 첨단기술력 강화 전략에 따른 전문·숙련인력의 비정상적 이동에 의한 침해도 빈발

*** 연도별 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경찰청)**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 수	40	84	140	97	111	98

*** 첨단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국정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 수	41	46	30	49	63	51

*** 유형별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국정원)**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기 타	계
52.8%	27.1%	7%	0.4%	12.7%	100%

*** 국가별 유출 건수('10~ '14년, 경찰청)**

중국	일본	미국	대만	기타	계
54%	12.7%	9.5%	8%	15.8%	100%

•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 (2017.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산기법)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7년 이하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15년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 국내침해 7년 이하 징역, 해외침해 15년 이하 징역

〈 양형기준 개정 내용 〉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 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 집행유예기준 개정 내용 〉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 를 지속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 피해 미변제 ● 동종전과(5년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 목적의 범행·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좋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기준 개정안의 적정성 검토

- 양형기준 개정안의 경우 현행 국내 주요 경제범죄 법정형과 양형기준 및 해외 양형* 대비 아직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양형의 강화와 아울러 양형기준 감경요소의 대폭 축소(예시: 형사처벌 전력없음)와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요소(예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축소가 병행하여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

*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관련 양형기준을 2~4단계까지 강화,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지식재산연구원)

** 2012~2014년까지 영업비밀·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선고현황은 선고건수 가운데 13%만 징역형으로 선고, 미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대법원)

• 국내의 주요 경제범죄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 횡령·배임범죄 〉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법정형
1	1억 미만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5년 이하, 10년 이하
2	1억 이상~5억 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3	5억 이상~50억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3년 이상
4	50억 이상~300억 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무기 또는 5년 이상
5	300억 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범죄 〉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법정형
1	1천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5년 이하
2	1천만원~3천만원	8월~2년	1년~3년	2년~4년	
3	3천만원~5천만원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년 이상
4	5천만원~1억원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7년 이상
5	1억원~5억원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무기 또는 10년 이상
6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수재 등의 죄)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및 동법 제5조 제4항: 수수액 3천만원~5천만원 : 5년 이상, 5천만원~1억원 : 7년 이상, 1억이상 :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기술침해범죄 법정형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적용 법률	● 산업기술보호법 ● 영업비밀보호법	경제스파이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 산기법 : (국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국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영비법 : (국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국외 : (개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불 이하 벌금, (법인) 1천만불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불 이하 벌금, (법인) 500만불 이하 벌금	● 국외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10억엔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5억엔 이하 벌금

• 국내와 미국의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실제 양형 비교

〈 영업비밀·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 현황(대법원) 〉

년도	유기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계
2014	24명	41명	34명	2명	18명	122명
2013	7명	31명	30명	4명	20명	94명
2012	18명	51명	46명	2명	36명	155명

〈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피고인 양형('96~ '12) (법제연구원) 〉

양형	피고인 수(해외유출)	피고인 수(국내유출)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0	27
자택연금	0	4
0~6개월 징역	1	7
6~18개월 징역	0	13
19~36개월 징역	1	17
37~54개월 징역	0	5
55~95개월 징역	1	6
96개월 이상 징역	1(188개월)	1(96개월)

제6장 공청회 개최

Ⅰ 개요

위원회는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하여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Ⅱ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1. 개요

위원회는 제77차 회의(2017. 1. 4.)에서 제13차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하고,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2017. 2. 6.(월) 14:00부터 18:10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 공청회 참석자

제13차 공청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준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을 대표하여 공청회 대상 범죄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홍승희 원광대 법전원 교수,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참석하였고,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구길모 충남대 법전원 교수, 최승재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연운희 변호사가 각 참석하였다.

3. 공청회 주제

2017. 1. 4. 위원회 제77차 회의에서 의결된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대상범위 설정, 범죄유형의 분류,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설정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4. 공청회 진행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 ~ 14:05	개회식	운영지원단장
14:05 ~ 14:10	인사말씀	양형위원회 위원장
14:10 ~ 14:30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발표	정준화 전문위원
14:30 ~ 15:1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5:10 ~ 15: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20 ~ 15:4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정준화 전문위원
15:40 ~ 16:1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6:10 ~ 16: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20 ~ 16:50	휴식	
16:50 ~ 17:10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정준화 전문위원
17:10 ~ 17:4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7:4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마무리 및 폐회	운영지원단장

5. 공청회 개최 결과

가. 진행 경과

일반시민, 학회 연구원, 법학 전공 학생, 기자 등 약 70명이 참석하여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을 방청하였다.

나.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지정 토론자 제시 의견

▶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① 양형기준의 명확성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특수' 라는 가중적 표지에 대한 체계정합성을 담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 특수도주죄의 경우에 있어서, '특수' 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은 '수용설비 또는 기구 손괴' , '폭행·협박' 또는 '2인 이상의 합동' 만인데, 다른 특수범죄(가. 유형 및 나. 유형의 범죄)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흉기 포함) 휴대' 의 경우 특수도주죄에서는 양형의 특별가중인자로 고려되고 있는 점은 특수범죄의 체계에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가중구성요건' 과 양형에 있어서의 '가중인자' 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추후 아예 '가중구성요건' 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②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은 범죄 이후의 요소로서, 범죄의 불법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범죄불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전의 정' 이 양형의 판단인자로 고려되는 것은 다소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음. 현실에서는 단순히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하여 자백 아닌 자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개전의 정' 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책임은 일단 '행위책임' 에 기초하는 것이고 행위 전후의 행위자의 행상이나 성격으로 그 행위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양형책임의 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력을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특별행위자가중인자로 규정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다.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구길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① 우리 형법의 경우 일본형법과 달리 견련범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통화위조죄를 범한 자가 동행사죄도 범한 경우를 1개의 범죄로 처리함은 현행 형법의 해석에 위반되므로, 이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② 일반적으로 새롭게 통화의 외관을 지닌 물건을 만들어내는 위조가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시키는 변조에 비하여 행위·결과 반가치 모든 면에서 그 불법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인자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③ 최근 실무에서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여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수표부도에 있어서도 받아들여 고의에 의한 수표부도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수표부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④ 부도 금액에 따라 유형을 세분하였다면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 중 하나인 수표부도와 관련하여 더욱 양형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도 금액에 따라서 형량을 구분하자는 의견

▶ 최승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① 통화에 관한 죄는 사회적인 신용의 훼손을 막는 것으로 하는 범죄이며 금액이 큰 경우 피해금액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금액이 큰 경우를 양형요소로는 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통화 위조의 경우 상표법위반죄나 마약범죄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거나 기법을 개발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할 필요성이 있음
- ③ 부수법 양형의 핵심이 수표부도의 사유에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라는 가중요소가 중요하며, 양형기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라.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이근우(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①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므로 '業으로 행한다' 고 하는 점에 대한 표지가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② 채무자가 되려는 사람이 형법상 지려천박에 해당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범행한 경우 가중이 필요함
- ③ 위계, 위력의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금전이 정당한 원리금 범위 내에 있다면 그 보유는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④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와 관련하여, 범행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 등이 특히 중한 경우 강도, 인질강도, 준사기, 부당이득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운희(변호사)

- ① 채권추심법위반의 제2유형으로 분류된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 등 행위태양이나 죄질이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피해회복' 내지 '처벌불원' 이 일반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 이라는 감경요소의 하나로 포함될 수는 있지만, 다른 범죄의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를 감안할 때 별도의 감경요소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 ③ 피해자인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채권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등으로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유발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별도의 감경요소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음

마. 방청객 의견

▶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위증내용과 관련된 범죄 형량의 다과를 참조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

▶ 답변(정준화 전문위원): 위증이 이루어진 범죄의 중대성은 특별가중인자로 고려될 수 있어 상당부분 그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안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2017. 2. 6.)

제7장 자문위원 회의 개최

Ⅰ 자문위원 현황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법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 및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현황은 제1부 제2장 '양형위원회 구성'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Ⅱ 제7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제7차 자문위원 회의는 2016. 8. 29.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 자문위원단은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정 경과 및 주요내용을 보고 받고,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다양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자문의견

가. 제1안건

(1) 쟁점

▶ "공무집행방해 1 ~ 3" 유형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 (이하 '복면 등 착용')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2) 자문의견

▶ 특별가중인자에 찬성하는 의견(1인)

- 복면 등 착용을 처벌하는 법이 없음에도 양형인자로 넣는 것이 생소하긴 하지만, 입법이

어느 시기에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양형인자로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가중인자에 반대하는 의견(7인)

- 강력범죄에서 복면 등 착용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집회, 시위에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임
- 일반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집회, 시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며, 성매매 여성, 성소수자 집회 등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집회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됨
- 복면 등 착용을 가중처벌 할 경우, 오히려 법에 대한 저항으로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양산될 수 있음
- 입법을 통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가중할 경우, 사법부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부가 불필요하게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음
-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복면 등 착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형인자로도 포섭이 가능함
- 양형인자로 대체입법을 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여론의 형성,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대유형 3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가중인자로 해결하는 방안(1인)

-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양형인자이므로, 공권력의 피해가 심각한 대유형 3의 경우에 양형인자로 가중하도록 함. 다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나. 제2안건

(1) 쟁점

▶ "공무집행방해 1 ~ 3" 유형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 (이하 '복면 등 착용') 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2) 자문의견

▶ 일반가중인자에 찬성하는 의견(1인)

- 제1안건의 근거와 동일

- 복면 등 착용을 가중처벌하면 폭력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가중인자에 반대하는 의견(7인)

- 제1안건의 근거와 동일
-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양형인자에 대하여 굳이 공무집행방해에서부터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색채를 부인할 수 없음
- 부당한 채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복면을 착용하게 되는 유인이 되기도 하므로, 양형인자로 포함시키기 전에 시위문화의 현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특별가중인자로 포함시킬 경우의 문제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되, 양형인자로서의 효력은 미약함에도 굳이 일반양형인자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
-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반양형인자로 무리하게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 복면을 착용했다고 하여 바로 폭력이 더 중해졌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대유형 3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가중인자로 해결하는 방안(1인)

-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되, 반영을 해야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경우로 한정해야 함

Ⅲ 제8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제8차 자문위원 회의는 2017. 3. 13.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 자문위원단은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다양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자문의견

가. 도주 · 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1) 쟁점

▶ "특수도주" 유형(도주 중 제2유형)에서 '폭행 또는 손괴로 인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안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함

(2)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함)

- 도주범죄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특수도주범죄의 형이 가중되는 요소를 특별히 추가할 필요는 없음
- 특수도주 과정에서 상해 이외에도 살인, 방화, 체포, 감금 등의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굳이 상해의 경우만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함

▶ 현행 안 수정(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특수도주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특수도주죄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 도주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특별히 다른 형법상 범죄들과 충돌이 없는 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면 범죄에 대한 사전 규범적 기능을 할 수 있음
- 상해의 결과가 과실로도 발생함을 고려할 때, 특수도주죄보다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면 법정형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중요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1) 제1안건

(가) 쟁점

▶ '통화 위조·변조' 유형의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조와 변조를 구별' 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현행 안은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위조와 변조를 구별하지 아니함

(나)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위·변조를 구별하지 아니함)

- 수범자 입장에서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법상 위조와 변조의 법정형이 같으며, 양형실무상 형량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함

-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규범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행사를 전제하고 있는 변조행위가 위조행위보다 반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음

▶ 현행 안 수정(위·변조를 구별함)

- 영향력으로 볼 때, 위조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구별하여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위조·변조의 구성요건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옳은 만큼 양형기준을 나누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

▶ 별개 의견

- 통화 위·변조에 대한 구별 필요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제2안건

(가) 쟁점

▶ '수표부도' 유형에서 '부도금액' 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할지 여부

▶ 현행 안은 소유형 분류를 하지 아니함. 다만, '수표소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를 특별양형인자로 하여 그 적용에서 부도금액 등을 반영

(나)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부도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하지 아니함)

- 통계상 부도금액과 형기 증가의 대체적인 경향성은 인정되나, 비교적 소액임에도 중한 형이 선고되거나, 다액임에도 경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 피해의 상대성을 고려할 때 부도금액 자체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양형인자(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반영함으로써 부도금액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

▶ 현행 안 수정(부도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함)

-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수표 부도의 경우에 피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도금액이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

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1) 쟁점

▶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중 '폭행, 협박 등 행위' 유형을 행위태양(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에 따라 세분해서 형량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안은 하나의 행위유형으로 분류하고 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하지 아니함

(2)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화할 경우 양형기준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점을 피하기 어려움

▶ 현행 안 수정(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함)

- 서민들, 특히 청년들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려 삶의 의지를 꺾는 만큼 행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엄벌이 필요함
- 형법상 각 해당 범죄 별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준 형량의 차이도 적지 아니함[폭행(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협박(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체포·감금(5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 등]

라.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 쟁점

▶ 최근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위증과 관련하여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구함

(2)자문의견

- 그동안 역사적으로 위증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약했으나, 이번 기회가 법적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위증행위 처벌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국회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규범적 행위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위증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범죄를 고백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제8차 자문위원 회의(2017. 3. 13.)

제8장 전문위원 연구

Ⅰ 2016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1. 경과

전문위원단은 회의를 거쳐 2016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위 계획안은 2016. 1. 25. 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전문위원 연구계획은, 구체적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설정을 목표로, 위원회 회의 일정, 제5기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연구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2. 연구계획안 내용

주제별 연구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5기 전반기 설정 대상 범죄(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조회 결과 검토

(1) 연구 목적

제5기 전반기 설정대상으로 2015. 12. 9. 양형기준안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하여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최종 의결될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연구 내용

- ▶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취합
- ▶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검토하여 양형기준안 수정 여부 논의
- ▶ 수정된 양형기준안을 양형위원회에 보고

나. 제5기 전반기 수정 대상 범죄(교통,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연구

(1) 연구 목적

제5기 전반기 수정대상으로 선정된 교통,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임

(2) 연구 내용

- ▶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정리
- ▶ 양형기준 시행성과 분석
- ▶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방안 논의 및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작성

다. 제5기 후반기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위증·증거인멸범죄(도주·범인은닉 추가)] 양형기준(수정)안에 대한 연구

(1) 연구 목적

제5기 후반기 설정 및 수정대상으로 선정된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범죄(도주·범인은닉 추가)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양형기준안 초안을 마련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임

(2) 연구 내용

- ▶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결정하는 원칙 및 고려사항
- ▶ 구체적인 대상범죄 선정
-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대한 양형실무 분석
- ▶ 양형실무에 나타난 형종 및 형량 통계 등 분석
-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양형인자 선정
- ▶ 대상 범죄군별 집행유예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수립
- ▶ 구체적 양형기준안 작성 및 수정

라.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 추가 선정 및 양형기준 수정안 연구

(1) 연구 목적

제5기 후반기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수정할 대상범죄를 추가 선정하고(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공갈범죄 등), 이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임

(2) 연구 내용

- ▶ 구체적인 수정 대상범죄 선정
- ▶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정리
- ▶ 양형기준 시행성과 분석
- ▶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방안 논의 및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작성

마. 제1 내지 5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1) 연구 목적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법정형,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 양형기준 간의 불균형이나 미비점을 해소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형기준 수정 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 ▶ 제1 내지 5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적용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 ▶ 양형기준간 권고형량범위나 양형인자의 불균형, 불합리 존재 유무 검토
- ▶ 개별 양형기준의 적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수정 필요성 검토
- ▶ 양형기준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한 사항 검토

3.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요약

순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1	제5기 전반기 설정 대상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공청회, 의견조회 결과 검토	1월 ~ 3월
2	제5기 전반기 수정 대상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연구	1월 ~ 4월
3	제5기 후반기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 양형기준(수정)안에 대한 연구	5월 ~ 12월
4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 추가 선정 및 양형기준 수정안 연구	5월 ~ 12월
5	제1 내지 5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11월 ~ 12월

전문위원 제108차 전체회의(2017. 3. 27.)

Ⅱ 전문위원 연구 성과

전문위원들은 확정된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가. 도주·범인은닉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정준화, 전휴재, 이용 전문위원

(2) 내용

-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및 양형기준 초안 작성

나.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안종열, 이용 전문위원

(2) 내용

-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및 양형기준 초안 작성

다.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정준화, 구민경, 이용, 김현아 전문위원

(2) 내용

-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및 양형기준 초안 작성

라.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수정 배경,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수정 방안,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안종열 전문위원

(2) 내용

-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를 반영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작성
-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마.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수정 배경,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수정 방안,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정준화, 이용 전문위원

(2) 내용

-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를 반영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작성
-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바.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수정 배경,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수정 방안,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전휴재, 이용 전문위원

(2) 내용

-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를 반영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작성
-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연구개요

- 주제 : 양형기준 수정 배경,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수정 방안,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담당 : 안종열, 구민경, 이용, 김현아 전문위원

(2) 내용

-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를 반영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작성
-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제9장 양형기준 운영점검,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Ⅰ 제 1, 2, 3, 4, 5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운영점검

1. 개요

살인 등 제1기 양형기준 7개 범죄군(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및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제2기 양형기준 8개 범죄군(2011.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증권·금융 등 4개 범죄군(2012.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과 선거범죄(2012. 9.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와 조세 등 3개 범죄군(2013.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과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배임수증재 등 3개 범죄군(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2014. 10.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장물 등 5개 범죄군(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과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 3개 범죄군(2016.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의 양형기준이 각각 적용됨에 따라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을 통해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조사하였다.

2. 조사 현황

가. 월별 조사현황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범죄군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살인범죄	수	50	51	57	49	52	72	66	78	63	43	39	34	654
	비율	7.6	7.8	8.7	7.5	8.0	11.0	10.1	11.9	9.6	6.6	6.0	5.2	100.0

(단위 : 명, %)

범죄군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뇌물범죄	수	70	46	97	59	35	71	47	97	76	75	94	54	821
	비율	8.5	5.6	11.8	7.2	4.3	8.6	5.7	11.8	9.3	9.1	11.4	6.6	100.0
성범죄	수	762	688	694	656	651	741	718	865	735	633	719	540	8,402
	비율	9.1	8.2	8.3	7.8	7.7	8.8	8.5	10.3	8.7	7.5	8.6	6.4	100.0
강도범죄	수	81	73	77	62	42	72	66	64	75	39	49	47	747
	비율	10.8	9.8	10.3	8.3	5.6	9.6	8.8	8.6	10.0	5.2	6.6	6.3	100.0
횡령·배임범죄	수	470	490	596	429	476	537	481	654	421	487	447	243	5,731
	비율	8.2	8.5	10.4	7.5	8.3	9.4	8.4	11.4	7.3	8.5	7.8	4.2	100.0
위증범죄	수	93	104	121	94	115	118	115	128	92	89	110	90	1,269
	비율	7.3	8.2	9.5	7.4	9.1	9.3	9.1	10.1	7.2	7.0	8.7	7.1	100.0
무고범죄	수	113	113	139	107	130	134	138	157	85	132	132	80	1,460
	비율	7.7	7.7	9.5	7.3	8.9	9.2	9.5	10.8	5.8	9.0	9.0	5.5	100.0
전체	**수**	**1,639**	**1,565**	**1,781**	**1,456**	**1,501**	**1,745**	**1,631**	**2,043**	**1,547**	**1,498**	**1,590**	**1,088**	**19,084**
	비율	**8.6**	**8.2**	**9.3**	**7.6**	**7.9**	**9.1**	**8.5**	**10.7**	**8.1**	**7.8**	**8.3**	**5.7**	**100.0**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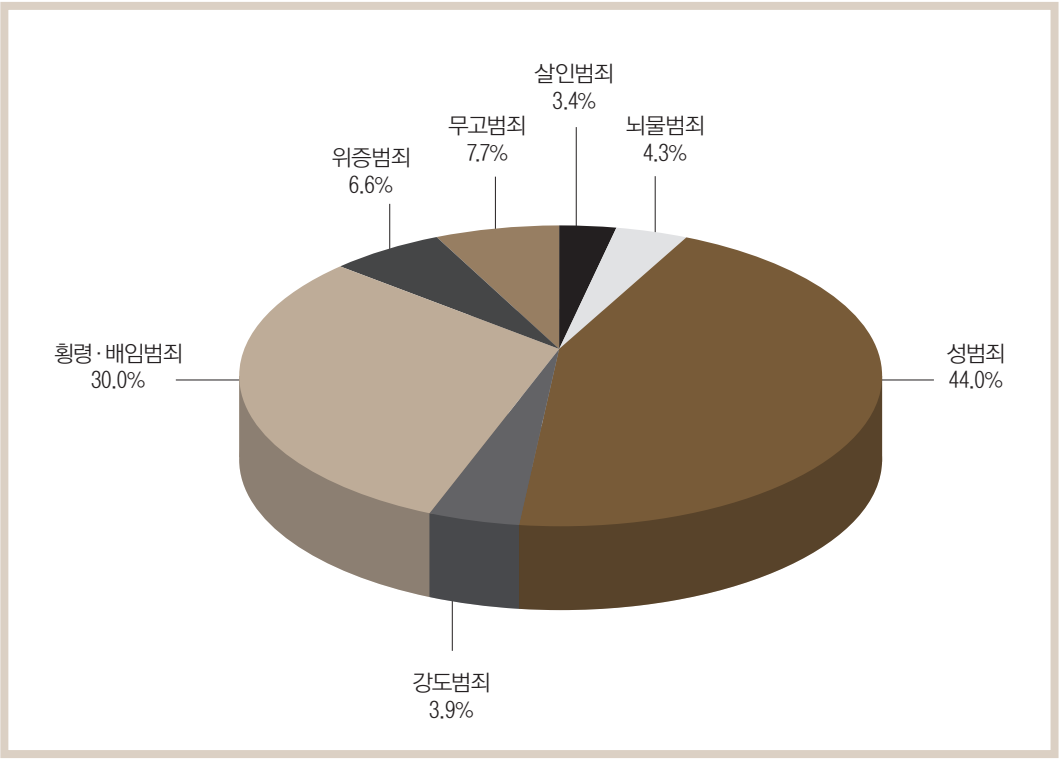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범죄군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	11	2	4	2	7	5	8	4	7	6	9	6	71
	비율	15.5	2.8	5.6	2.8	9.9	7.0	11.3	5.6	9.9	8.5	12.7	8.5	100.0
사기범죄	수	3,571	3,496	4,020	3,601	3,963	4,183	3,888	5,273	3,640	3,520	4,005	2,444	45,604
	비율	7.8	7.7	8.8	7.9	8.7	9.2	8.5	11.6	8.0	7.7	8.8	5.4	100.0
절도범죄	수	1,037	1,030	1,227	1,127	1,252	1,344	1,266	1,562	1,127	1,024	1,023	924	13,943
	비율	7.4	7.4	8.8	8.1	9.0	9.6	9.1	11.2	8.1	7.3	7.3	6.6	100.0
공문서범죄	수	79	88	102	119	104	69	114	127	108	89	107	59	1,165
	비율	6.8	7.6	8.8	10.2	8.9	5.9	9.8	10.9	9.3	7.6	9.2	5.1	100.0
사문서범죄	수	166	178	223	168	178	203	219	250	194	173	161	116	2,229
	비율	7.4	8.0	10.0	7.5	8.0	9.1	9.8	11.2	8.7	7.8	7.2	5.2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1,074	894	994	830	997	999	955	1,297	803	844	756	713	11,156
	비율	9.6	8.0	8.9	7.4	8.9	9.0	8.6	11.6	7.2	7.6	6.8	6.4	100.0
식품·보건범죄	수	349	269	309	223	261	306	277	474	245	266	359	223	3,561
	비율	9.8	7.6	8.7	6.3	7.3	8.6	7.8	13.3	6.9	7.5	10.1	6.3	100.0
마약범죄	수	484	452	479	454	491	507	449	639	424	426	421	334	5,560
	비율	8.7	8.1	8.6	8.2	8.8	9.1	8.1	11.5	7.6	7.7	7.6	6.0	100.0
전체	**수**	**6,771**	**6,409**	**7,358**	**6,524**	**7,253**	**7,616**	**7,176**	**9,626**	**6,548**	**6,348**	**6,841**	**4,819**	**83,289**
	비율	**8.1**	**7.7**	**8.8**	**7.8**	**8.7**	**9.1**	**8.6**	**11.6**	**7.9**	**7.6**	**8.2**	**5.8**	**100.0**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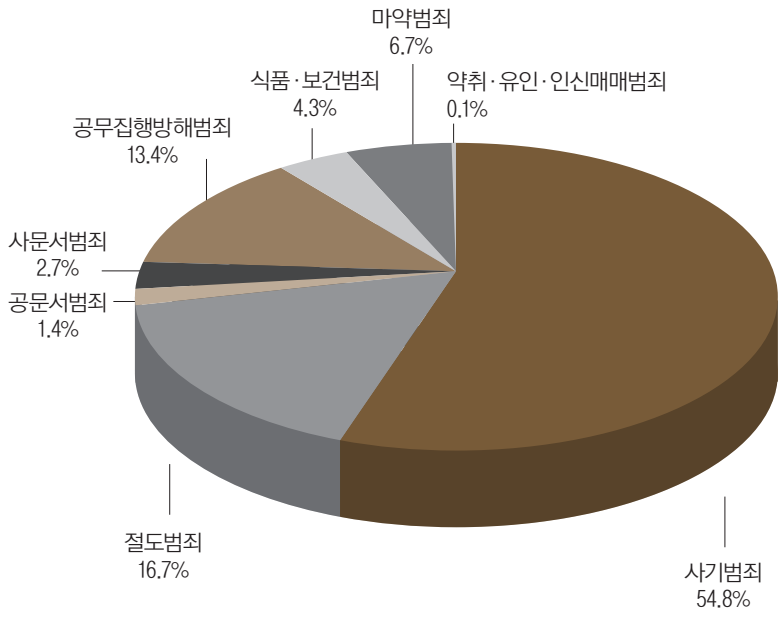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범죄군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권·금융범죄	수	48	51	51	37	39	61	53	71	59	40	54	38	602
	비율	8.0	8.5	8.5	6.1	6.5	10.1	8.8	11.8	9.8	6.6	9.0	6.3	100.0
지식재산권 범죄	수	113	124	142	105	135	110	121	171	116	85	191	72	1,485
	비율	7.6	8.4	9.6	7.1	9.1	7.4	8.1	11.5	7.8	5.7	12.9	4.8	100.0
폭력범죄	수	2,997	3,161	3,528	2,978	3,379	3,696	3,455	4,463	2,919	2,791	2,295	2,305	37,967
	비율	7.9	8.3	9.3	7.8	8.9	9.7	9.1	11.8	7.7	7.4	6.0	6.1	100.0
교통범죄	수	1,706	1,646	1,712	1,371	1,541	1,665	1,662	1,988	1,305	1,330	1,208	1,227	18,361
	비율	9.3	9.0	9.3	7.5	8.4	9.1	9.1	10.8	7.1	7.2	6.6	6.7	100.0
선거범죄	수	11	23	98	158	90	202	141	189	157	99	90	29	1,287
	비율	0.9	1.8	7.6	12.3	7.0	15.7	11.0	14.7	12.2	7.7	7.0	2.3	100.0
조세범죄	수	141	135	185	124	113	172	150	205	143	158	159	100	1,785
	비율	7.9	7.6	10.4	6.9	6.3	9.6	8.4	11.5	8.0	8.9	8.9	5.6	100.0
공갈범죄	수	85	73	106	63	81	100	73	105	87	75	97	48	993
	비율	8.6	7.4	10.7	6.3	8.2	10.1	7.4	10.6	8.8	7.6	9.8	4.8	100.0
방화범죄	수	44	27	34	31	24	37	23	34	31	23	20	25	353
	비율	12.5	7.6	9.6	8.8	6.8	10.5	6.5	9.6	8.8	6.5	5.7	7.1	100.0
전체	**수**	**5,145**	**5,240**	**5,856**	**4,867**	**5,402**	**6,043**	**5,678**	**7,226**	**4,817**	**4,601**	**4,114**	**3,844**	**62,833**
	비율	**8.2**	**8.3**	**9.3**	**7.7**	**8.6**	**9.6**	**9.0**	**11.5**	**7.7**	**7.3**	**6.5**	**6.1**	**100.0**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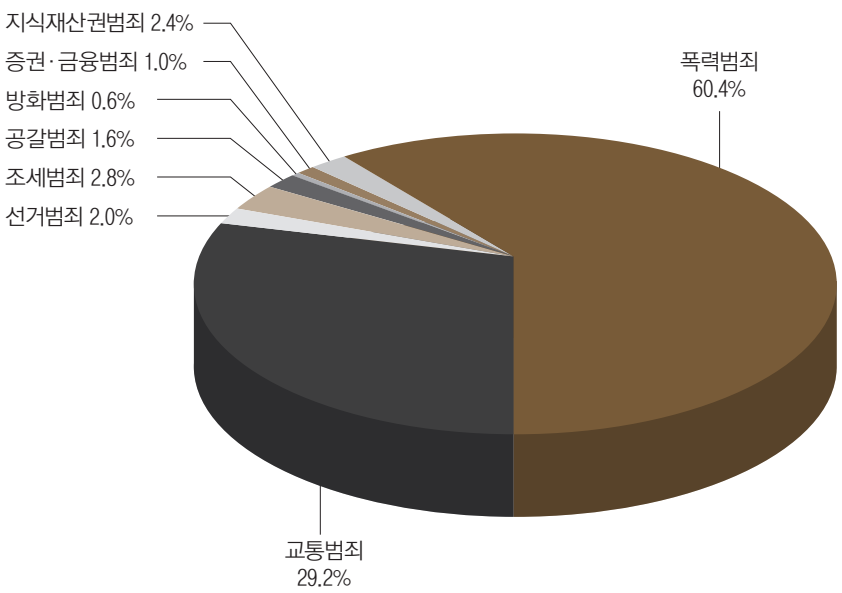

(4) 제4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범죄군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배임수증재 범죄	수	29	50	72	34	57	88	51	51	76	51	33	22	614
	비율	4.7	8.1	11.7	5.5	9.3	14.3	8.3	8.3	12.4	8.3	5.4	3.6	100.0
변호사법 위반범죄	수	66	55	68	53	73	70	80	60	64	65	53	50	757
	비율	8.7	7.3	9.0	7.0	9.6	9.2	10.6	7.9	8.5	8.6	7.0	6.6	100.0
성매매 범죄	수	351	287	331	302	339	330	399	507	359	394	371	351	4,321
	비율	8.1	6.6	7.7	7.0	7.8	7.6	9.2	11.7	8.3	9.1	8.6	8.1	100.0
체포·감금 ·유기 ·학대범죄	수	159	160	168	127	151	141	134	197	119	123	122	148	1,749
	비율	9.1	9.1	9.6	7.3	8.6	8.1	7.7	11.3	6.8	7.0	7.0	8.5	100.0
장물범죄	수	60	44	80	52	48	58	53	51	42	33	42	27	590
	비율	10.2	7.5	13.6	8.8	8.1	9.8	9.0	8.6	7.1	5.6	7.1	4.6	100.0
권리행사 방해범죄	수	88	87	106	80	95	97	108	125	80	67	66	61	1,060
	비율	8.3	8.2	10.0	7.5	9.0	9.2	10.2	11.8	7.5	6.3	6.2	5.8	100.0
업무방해 범죄	수	519	515	668	587	738	764	629	868	526	565	607	406	7,392
	비율	7.0	7.0	9.0	7.9	10.0	10.3	8.5	11.7	7.1	7.6	8.2	5.5	100.0
손괴범죄	수	214	260	241	192	252	295	319	481	258	268	232	266	3,278
	비율	6.5	7.9	7.4	5.9	7.7	9.0	9.7	14.7	7.9	8.2	7.1	8.1	100.0
사행성· 게임물 범죄	수	520	441	441	381	311	416	405	485	306	270	369	233	4,578
	비율	11.4	9.6	9.6	8.3	6.8	9.1	8.8	10.6	6.7	5.9	8.1	5.1	100.0
전체	**수**	**2,006**	**1,899**	**2,175**	**1,808**	**2,064**	**2,259**	**2,178**	**2,825**	**1,830**	**1,836**	**1,895**	**1,564**	**24,339**
	비율	**8.2**	**7.8**	**8.9**	**7.4**	**8.5**	**9.3**	**8.9**	**11.6**	**7.5**	**7.5**	**7.8**	**6.4**	**100.0**

[제4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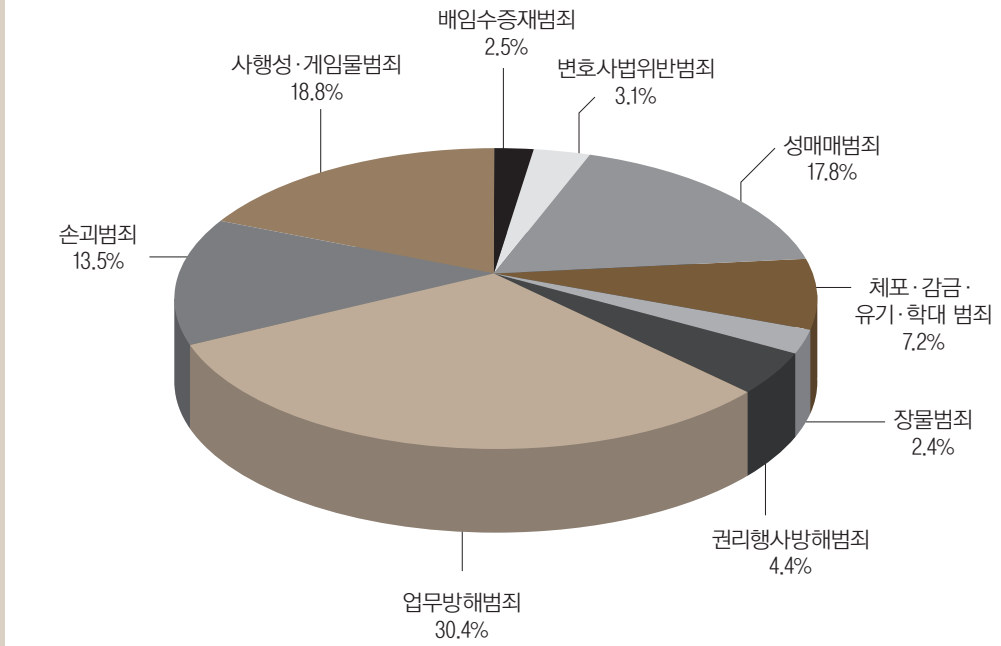

(5) 제5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범죄군		2016년						2017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수	10	78	162	245	434	310	355	361	341	2,296
	비율	0.4	3.4	7.1	10.7	18.9	13.5	15.5	15.7	14.9	100.0
석유사업법 위반범죄	수	0	3	7	12	19	20	13	21	2	97
	비율	0.0	3.1	7.2	12.4	19.6	20.6	13.4	21.6	2.1	100.0
과실치사 상범죄	수	1	20	54	70	109	66	99	69	62	550
	비율	0.2	3.6	9.8	12.7	19.8	12.0	18.0	12.5	11.3	100.0
전체	**수**	**11**	**101**	**223**	**327**	**562**	**396**	**467**	**451**	**405**	**2,943**
	비율	**0.4**	**3.4**	**7.6**	**11.1**	**19.1**	**13.5**	**15.9**	**15.3**	**13.8**	**100.0**

[제5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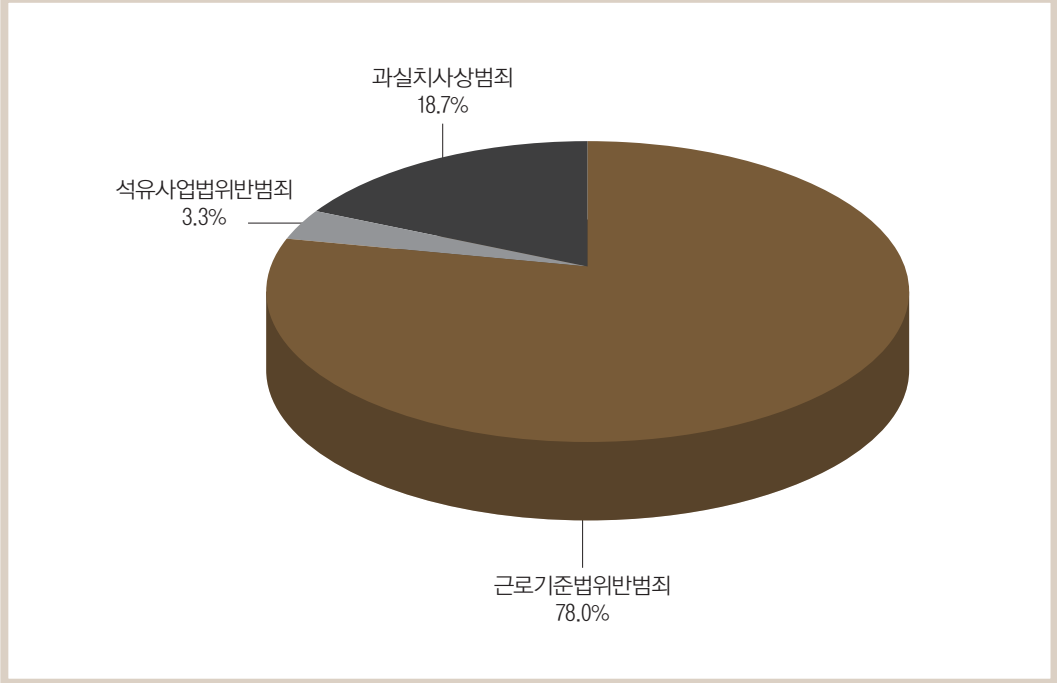

나. 세부 죄명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6. 4. 1. ~ 2017. 3. 31.)에 조사된 제1, 2, 3, 4, 5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세부죄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살인범죄	강도살인	0	2	3	1	4	2	0	10	3	0	1	1	27
	강도살인미수	0	0	0	0	0	0	0	0	0	0	2	0	2
	살인	22	23	19	12	16	20	24	26	18	18	18	14	230
	살인교사	0	0	2	0	0	0	0	0	0	0	0	0	2
	살인미수	26	22	29	32	28	43	38	33	38	19	14	17	339
	성폭력범죄위반(강간등살인)	0	0	0	0	0	0	0	0	0	1	0	0	1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0	2	1	0	3	2	2	1	0	0	0	0	11
	존속살해	2	2	3	2	1	3	1	7	2	3	1	2	29
	존속살해미수	0	0	0	2	0	2	1	1	2	2	2	0	12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살인등)	0	0	0	0	0	0	0	0	0	0	1	0	1
	합계	**50**	**51**	**57**	**49**	**52**	**72**	**66**	**78**	**63**	**43**	**39**	**34**	**654**
뇌물범죄	뇌물공여	32	25	52	28	11	32	22	32	28	36	49	27	374
	뇌물공여약속	0	3	0	0	0	0	0	0	0	0	0	0	3
	뇌물공여의사표시	2	0	2	0	0	2	2	0	4	1	5	0	18
	뇌물수수	26	10	36	19	14	17	14	19	29	16	23	21	244
	뇌물요구	0	0	0	0	1	2	0	0	0	0	0	0	3
	부정처사후수뢰	1	0	1	5	0	2	1	6	3	0	2	0	21
	수뢰후부정처사	1	0	0	2	0	1	2	0	0	0	0	0	6
	제3자뇌물교부	1	0	0	1	2	1	1	2	4	3	1	0	16
	제3자뇌물취득	3	0	1	1	3	3	3	3	2	7	1	2	29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4	8	5	3	4	11	2	35	6	12	13	4	107
	합계	**70**	**46**	**97**	**59**	**35**	**71**	**47**	**97**	**76**	**75**	**94**	**54**	**821**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범죄	강간	37	27	37	27	26	30	36	35	32	21	23	29	360
	강간미수상해	1	0	0	0	0	0	0	0	0	0	0	0	1
	강간상해	8	8	11	9	3	4	4	5	3	8	7	2	72
	강간치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강간치상	13	13	12	6	11	7	8	14	4	12	10	6	116
	강도강간	0	0	1	1	0	0	0	1	0	0	0	1	4
	강제추행	321	311	287	275	276	310	312	403	337	286	294	263	3,675
	강제추행상해	4	2	2	2	3	1	1	2	1	3	1	0	22
	강제추행치상	7	4	6	7	4	8	8	8	10	8	6	4	80
	미성년자간음	0	1	0	0	0	0	0	0	0	0	0	0	1
	미성년자의제강간	2	2	5	0	4	3	2	1	1	0	1	2	2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2	0	1	2	0	2	2	0	1	1	2	1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0	1	1	0	0	1	1	0	0	0	2	6
	상습강제추행	0	0	0	0	0	0	0	0	2	0	0	2	4
	성폭력범죄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1	2	1	1	1	1	3	0	1	0	1	13
	성폭력범죄위반(강간등상해)	0	0	0	0	0	0	0	0	0	0	0	1	1
	성폭력범죄위반(강간등치상)	0	1	0	0	0	0	0	0	0	0	1	0	2
	성폭력범죄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0	0	1	1	0	0	0	0	0	0	0	2
	성폭력범죄위반(절도강간등)	0	1	0	0	0	0	0	1	0	0	0	0	2
	성폭력범죄위반(주거침입강간등)	0	1	1	1	1	1	1	1	1	0	0	0	8
	성폭력범죄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3	0	0	2	1	1	2	0	0	0	1	0	10
	성폭력범죄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	2	1	2	0	2	3	2	0	0	0	1	16
	성폭력범죄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1	1	1	0	0	0	0	0	0	0	0	0	3
	성폭력범죄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1	0	0	0	0	0	0	0	0	0	0	2
	성폭력범죄위반(특수강간등)	0	0	0	2	0	0	0	0	0	0	0	0	2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폭력범죄위반(특수강도강간등)	0	0	1	2	1	0	2	0	0	0	0	0	6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	6	2	4	5	2	1	4	2	2	7	0	37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8	21	17	28	15	25	22	26	22	27	26	11	268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	2	0	2	0	1	0	4	1	0	2	0	14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6	7	4	4	7	8	6	5	5	2	9	0	63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5	2	3	3	3	1	1	2	3	0	0	0	23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1	0	0	0	1	3	0	0	0	1	0	6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2	0	0	1	0	3	0	1	0	1	2	3	13
	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0	0	0	0	0	1	0	0	0	0	0	0	1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10	2	7	3	11	3	10	4	3	7	4	4	68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5	5	3	5	2	3	8	2	3	2	3	3	44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등)	3	4	5	3	1	6	1	3	4	4	2	0	36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2	8	11	10	8	7	9	11	13	16	11	4	120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5	1	4	9	3	7	6	4	5	4	6	5	59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2	3	1	3	3	0	1	4	1	2	1	22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2	1	0	0	2	5	0	1	0	0	1	1	13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3	6	2	5	6	5	1	3	4	6	3	0	44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0	1	1	1	4	0	1	1	3	0	0	0	12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0	1	0	0	0	0	1	1	1	0	0	1	5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0	0	0	0	1	0	0	1	0	0	1	0	3
	성폭력처벌법위반(절도강간등)	1	1	0	1	0	0	0	0	1	0	0	0	4
	성폭력처벌법위반(절도강제추행)	0	0	0	0	0	0	0	0	1	0	0	0	1
	성폭력처벌법위반(절도준강간등)	1	0	0	0	0	0	0	0	2	0	0	0	3
	성폭력처벌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0	0	0	0	0	1	1	1	0	0	1	1	5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3	4	3	5	5	8	5	9	7	8	9	3	69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	4	7	4	5	3	4	11	4	10	8	4	66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2	1	2	0	0	1	0	2	1	0	2	0	11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5	1	2	0	0	3	2	1	2	1	3	5	25
	성폭력처벌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4	2	6	6	7	3	6	4	4	4	3	5	54
	성폭력처벌법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0	2	0	0	0	0	0	1	0	1	0	1	5
	성폭력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5	2	2	3	3	3	3	3	3	4	6	7	44
	성폭력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0	13	9	8	12	10	10	9	10	4	13	10	118
	성폭력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0	0	1	0	0	2	1	1	3	1	1	1	11
	성폭력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	0	3	2	2	3	0	4	3	3	0	1	24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등)	9	8	14	15	8	6	16	13	7	17	7	9	129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2	4	2	2	4	1	0	2	3	1	2	2	25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0	2	0	0	0	0	0	0	2	0	0	0	4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0	1	0	0	0	1	0	1	1	0	0	1	5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6	0	8	7	4	8	0	6	3	0	4	1	47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등)	13	9	21	15	4	6	10	5	20	5	13	10	131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0	0	0	2	3	2	0	0	0	0	0	0	7
	유사강간	13	9	8	6	10	13	11	14	10	5	13	6	118
	유사강간상해	1	1	0	2	0	2	1	1	0	0	2	2	12
	유사강간치상	0	1	2	2	1	0	1	1	1	0	0	1	10
	준강간	29	21	22	19	26	37	28	30	21	24	27	15	299
	준강간치상	0	1	2	3	1	1	0	1	1	2	2	0	14
	준강제추행	51	50	55	40	58	48	55	65	51	39	43	42	597
	준강제추행치상	1	0	0	0	0	0	0	1	0	1	1	1	5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준유사강간	7	7	7	10	7	2	3	7	2	7	9	3	71
	준유사강간상해	1	0	0	0	0	0	0	0	0	0	0	0	1
	준유사강간치상	0	1	0	0	0	1	2	0	0	0	1	1	6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	12	10	10	13	13	15	18	15	27	7	30	5	175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상해)	1	1	0	1	0	0	3	0	0	0	0	1	7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치상)	0	1	2	1	3	4	0	0	2	1	2	2	18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47	51	42	47	43	62	53	70	48	51	56	32	602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14	6	10	4	12	17	11	8	15	7	13	5	122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7	8	9	4	5	8	3	8	6	6	6	6	76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력간음)	0	0	1	0	0	0	0	0	0	0	0	0	1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성행위)	4	4	3	4	1	4	10	2	1	1	4	1	39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	1	0	2	2	0	3	3	0	0	1	1	2	15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추행)	0	1	0	0	0	0	0	0	0	1	0	0	2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등)	10	5	4	2	5	9	2	5	3	4	8	2	59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제추행)	8	7	4	1	1	2	2	8	4	4	2	1	44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유사성행위)	0	1	1	6	3	2	1	3	2	1	2	2	24
	합계	**762**	**688**	**694**	**656**	**651**	**741**	**718**	**865**	**735**	**633**	**719**	**540**	**8,402**
강도범죄	강도	14	10	10	5	4	6	5	3	7	5	4	2	75
	강도살인	0	0	0	0	0	0	0	0	0	0	2	0	2
	강도상해	26	24	36	23	17	35	31	18	35	14	12	21	292
	강도치사	0	0	0	0	0	0	0	0	1	0	0	0	1
	강도치상	2	1	0	4	1	0	1	2	7	3	5	3	29
	상습특수강도	0	1	0	0	0	0	0	0	0	0	0	0	1
	준강도	3	4	6	7	4	10	3	5	6	4	3	0	55
	준강도교사	1	0	0	0	0	0	0	0	0	0	0	0	1
	준특수강도	2	2	0	1	0	2	2	1	0	1	1	2	14
	특수강도	30	31	25	21	16	18	24	34	19	12	20	18	268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강도)	1	0	0	1	0	1	0	0	0	0	1	1	5
	특정범죄가중법위반(강도상해등재범)	2	0	0	0	0	0	0	1	0	0	1	0	4
	합계	**81**	**73**	**77**	**62**	**42**	**72**	**66**	**64**	**75**	**39**	**49**	**47**	**747**
횡령·배임범죄	배임	28	33	66	26	29	36	30	53	28	24	23	13	389
	업무상배임	34	33	66	44	35	47	49	66	43	43	48	22	530
	업무상횡령	196	173	192	144	178	194	192	230	158	173	170	103	2,103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7	12	6	14	6	10	19	20	17	23	18	3	15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9	20	25	29	21	29	26	29	26	41	33	8	306
	횡령	186	219	241	172	207	221	165	256	149	183	155	93	2,247
	횡령교사	0	0	0	0	0	0	0	0	0	0	0	1	1
	합계	**470**	**490**	**596**	**429**	**476**	**537**	**481**	**654**	**421**	**487**	**447**	**243**	**5,731**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0	1	1	0	0	0	0	0	0	0	0	1	3
	모해위증	1	3	0	1	8	2	2	6	0	3	2	0	28
	모해위증교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위증	81	88	101	80	97	95	103	108	81	80	92	79	1,085
	위증교사	11	12	19	13	10	20	10	14	11	6	16	10	152
	합계	**93**	**104**	**121**	**94**	**115**	**118**	**115**	**128**	**92**	**89**	**110**	**90**	**1,269**
무고범죄	무고	109	113	135	107	128	132	137	155	84	127	129	80	1,436
	무고교사	3	0	4	0	2	2	1	2	1	5	3	0	23
	특정범죄가중법위반(무고)	1	0	0	0	0	0	0	0	0	0	0	0	1
	합계	**113**	**113**	**139**	**107**	**130**	**134**	**138**	**157**	**85**	**132**	**132**	**80**	**1,460**
전체		**1,639**	**1,565**	**1,781**	**1,456**	**1,501**	**1,745**	**1,631**	**2,043**	**1,547**	**1,498**	**1,590**	**1,088**	**19,084**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간음약취	1	0	0	0	0	0	0	0	1	0	0	3	5
	간음유인	1	0	2	0	2	0	0	0	0	0	3	0	8
	국외이송유인	0	0	0	0	0	0	0	0	0	0	0	1	1
	미성년자약취	1	0	1	2	1	0	0	1	4	4	1	0	15
	미성년자유인	2	2	1	0	2	2	1	0	0	2	1	1	14
	성매매약취	0	0	0	0	0	0	3	0	0	0	0	0	3
	성매매유인	3	0	0	0	0	0	0	0	2	0	1	0	6
	영리약취	1	0	0	0	0	1	0	3	0	0	0	0	5
	영리유인	0	0	0	0	2	0	4	0	0	0	1	0	7
	인질상해	1	0	0	0	0	0	0	0	0	0	0	0	1
	추행약취	0	0	0	0	0	1	0	0	0	0	2	0	3
	추행유인	1	0	0	0	0	1	0	0	0	0	0	1	3
	합계	**11**	**2**	**4**	**2**	**7**	**5**	**8**	**4**	**7**	**6**	**9**	**6**	**71**
사기범죄	사기	3,440	3,345	3,854	3,477	3,814	4,041	3,755	5,119	3,491	3,326	3,835	2,362	43,859
	사기교사	0	1	0	0	0	0	0	0	0	0	0	0	1
	상습사기	14	19	21	16	14	10	10	18	5	16	8	7	158
	상습준사기	0	0	0	0	0	0	0	0	0	2	0	0	2
	준사기	4	1	2	0	4	2	3	1	4	13	0	4	38
	컴퓨터등사용사기	51	52	59	46	51	49	27	61	35	44	45	36	5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62	78	84	62	80	81	93	74	105	119	117	35	990
	합계	**3,571**	**3,496**	**4,020**	**3,601**	**3,963**	**4,183**	**3,888**	**5,273**	**3,640**	**3,520**	**4,005**	**2,444**	**45,604**
절도범죄	건조물침입절도	0	0	0	0	0	0	0	0	1	0	0	0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0	2	1	1	3	6	3	1	2	1	2	23
	산림보호법위반	1	4	4	11	7	1	2	5	2	3	0	5	45
	산림자원법위반	17	11	16	16	12	10	20	27	11	14	17	13	18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0	0	0	1	0	0	2	5	1	4	2	2	17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0	0	0	0	0	0	1	4	0	4	3	1	13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상습절도	0	0	1	0	0	0	41	39	21	14	33	22	171
	상습특수절도	0	0	0	0	0	0	11	5	4	2	8	8	3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0	0	0	0	0	0	0	0	0	0	0	1	1
	야간방실침입절도	0	0	0	0	0	0	0	0	0	1	0	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80	53	60	62	69	86	69	92	85	76	59	56	8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0	0	0	0	0	0	0	2	0	0	1	0	3
	야간방실침입절도	4	9	8	5	8	2	9	10	12	5	3	3	78
	야간선박침입절도	0	0	0	0	0	0	1	0	1	0	0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25	24	40	28	28	25	29	45	35	30	29	26	364
	절도	676	645	710	714	783	874	753	953	620	574	545	542	8,389
	절도교사	1	1	0	0	1	0	0	2	3	6	6	1	21
	특수절도	199	233	310	234	268	265	241	285	241	222	233	159	2,890
	특수절도교사	0	1	0	0	0	0	1	0	1	1	1	0	5
	특정범죄가중법위반(산림)	1	2	9	0	6	1	3	3	5	1	1	0	32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32	47	67	55	69	77	77	82	83	65	81	83	818
	합계	**1,037**	**1,030**	**1,227**	**1,127**	**1,252**	**1,344**	**1,266**	**1,562**	**1,127**	**1,024**	**1,023**	**924**	**13,943**
공문서범죄	공문서변조	1	8	6	7	4	2	9	12	8	1	5	1	64
	공문서부정행사	12	20	23	18	24	20	31	28	14	18	19	12	239
	공문서부정행사교사	0	1	0	0	0	0	0	0	0	0	0	0	1
	공문서위조	24	19	16	27	9	16	26	26	14	13	21	14	225
	공전자기록등변작	0	0	0	0	1	0	0	0	0	0	0	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6	26	39	43	46	15	32	40	54	46	40	16	413
	공전자기록등위작	1	3	3	3	7	1	1	2	1	3	3	1	2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	10	7	19	9	12	12	12	8	5	6	4	124
	변조공문서행사	0	0	0	0	0	0	0	0	0	1	0	0	1
	위조공문서행사	4	0	1	0	1	0	3	3	1	0	3	2	18
	허위공문서작성	1	1	7	2	3	3	0	4	8	2	8	9	48
	허위공문서작성교사	0	0	0	0	0	0	0	0	0	0	1	0	1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0	0	0	0	0	0	0	0	0	0	1	0	1
	합계	**79**	**88**	**102**	**119**	**104**	**69**	**114**	**127**	**108**	**89**	**107**	**59**	**1,165**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0	1	0	0	3	0	0	1	1	0	0	0	6
	사문서변조	22	9	8	10	10	8	10	6	6	9	13	8	119
	사문서변조교사	0	1	0	0	0	0	0	0	0	0	0	0	1
	사문서부정행사	0	1	1	1	1	0	0	0	0	0	0	0	4
	사문서위조	137	155	170	142	152	180	194	223	160	152	133	97	1,895
	사문서위조교사	1	0	0	0	0	1	0	1	0	1	0	0	4
	사서명위조	1	0	0	0	0	0	0	0	0	0	0	0	1
	사전자기록등변작	0	0	1	0	1	0	0	0	0	0	0	0	2
	사전자기록등위작	1	4	2	6	1	1	1	2	14	4	8	5	49
	위조사문서행사	2	4	3	3	2	3	3	6	8	3	3	1	4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	3	3	6	6	9	10	7	5	4	4	5	64
	자격모용사문서작성교사	0	0	0	0	0	0	0	1	0	0	0	0	1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0	0	0	0	0	0	0	1	0	0	0	0	1
	허위작성진단서행사	0	0	1	0	0	0	0	0	0	0	0	0	1
	허위진단서작성	0	0	34	0	2	0	1	2	0	0	0	0	39
	허위진단서작성교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합계	**166**	**178**	**223**	**168**	**178**	**203**	**219**	**250**	**194**	**173**	**161**	**116**	**2,229**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912	761	796	692	827	870	810	1,102	706	708	631	615	9,430
	공용물건손상	49	49	67	34	51	51	46	67	34	30	46	31	555
	공용서류무효	1	1	2	1	0	1	4	3	1	0	0	1	15
	공용서류손상	7	2	2	1	1	2	5	4	5	3	2	2	36
	위계공무집행방해	28	21	44	21	41	21	27	32	14	53	38	30	370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0	0	0	0	0	0	0	1	0	0	0	0	1
	특수공무집행방해	51	45	62	45	53	36	36	49	30	30	24	28	489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0	0	2	0	0	0	0	0	0	0	0	0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5	14	18	32	18	14	26	35	11	18	15	6	232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특수공용물건손상	1	1	1	4	6	4	1	4	2	2	0	0	26
	합계	**1,074**	**894**	**994**	**830**	**997**	**999**	**955**	**1,297**	**803**	**844**	**756**	**713**	**11,156**
식품·보건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9	4	10	4	11	9	8	12	5	11	9	10	1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45	26	28	42	29	56	33	61	38	34	68	30	49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1	0	0	0	0	0	0	0	0	0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0	1	2	0	0	0	0	1	0	5	0	0	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3	14	21	12	7	10	18	19	7	9	5	18	1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0	0	0	2	1	2	1	1	2	0	0	1	10
	식품위생법위반	155	135	134	95	106	103	103	233	106	91	123	103	1,487
	약사법위반	37	17	18	8	17	22	31	19	6	16	36	5	232
	약사법위반교사	0	1	0	0	0	0	0	0	1	0	0	0	2
	의료법위반	50	42	76	42	60	76	64	75	40	65	92	28	710
	의료법위반교사	0	2	0	0	0	0	1	0	0	0	1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30	26	18	16	27	24	18	45	33	30	21	28	316
	화장품법위반	0	0	2	2	3	4	0	8	7	5	4	0	35
	합계	**349**	**269**	**309**	**223**	**261**	**306**	**277**	**474**	**245**	**266**	**359**	**223**	**3,561**
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52	27	43	30	47	37	25	42	30	22	29	38	422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6	4	10	1	4	7	4	13	6	11	8	11	85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409	400	396	411	413	442	395	566	376	372	369	275	4,82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사	0	0	0	0	0	0	0	0	0	1	0	0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0	0	0	0	5	5	0	1	0	0	2	0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0	0	0	0	1	2	1	0	0	0	1	6
	특정범죄가중법위반(마약)	1	0	0	0	0	0	0	0	0	0	0	0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	1	0	6	0	0	2	2	3	0	3	1	0	1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0	0	0	0	1	2	2	4	1	9	3	0	22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4	21	24	12	21	11	19	9	11	8	9	9	168
	합계	**484**	**452**	**479**	**454**	**491**	**507**	**449**	**639**	**424**	**426**	**421**	**334**	**5,560**
전체		6,771	6,409	7,358	6,524	7,253	7,616	7,176	9,626	6,548	6,348	6,841	4,819	83,289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권·금융범죄	외부감사법위반	1	2	0	0	1	6	3	3	4	3	4	2	29
	자본시장법위반	14	16	22	16	15	29	25	51	23	16	27	26	280
	증권거래법위반	1	0	1	1	1	0	1	3	0	0	0	0	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10	6	8	3	9	7	3	3	11	3	9	3	7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19	23	16	15	9	12	17	6	8	16	8	7	1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3	4	4	2	4	7	4	5	13	2	6	0	54
	합계	**48**	**51**	**51**	**37**	**39**	**61**	**53**	**71**	**59**	**40**	**54**	**38**	**602**
지식재산권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0	0	2	2	0	2	0	4	0	1	4	1	1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1	0	0	0	0	1	0	3	0	3	0	0	8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0	0	1	6	0	0	1	0	0	0	1	0	9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4	8	13	12	8	13	8	6	6	13	0	92
	산업기술보호법위반	0	0	1	0	0	0	0	0	0	0	0	0	1
	상표법위반	79	87	90	61	73	58	75	94	69	49	65	43	843
	실용신안법위반	1	2	0	0	0	0	0	0	0	2	0	0	5
	저작권법위반	30	31	39	19	45	40	32	62	39	24	107	26	494
	특허법위반	1	0	1	4	5	1	0	0	2	0	1	2	17
	합계	**113**	**124**	**142**	**105**	**135**	**110**	**121**	**171**	**116**	**85**	**191**	**72**	**1,485**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폭력범죄	상습상해	3	3	7	2	2	6	5	1	5	2	3	1	40
	상습존속상해	0	0	1	0	0	0	0	0	1	0	0	0	2
	상습존속폭행	1	0	0	0	0	0	1	1	0	0	0	1	4
	상습특수상해	1	0	0	1	0	1	0	0	0	1	1	1	6
	상습특수폭행	0	0	2	0	0	0	0	1	0	0	0	0	3
	상습폭행	2	10	6	6	3	4	7	9	5	1	3	2	58
	상습협박	2	0	1	0	1	0	0	1	3	0	2	0	10
	상해	1,189	1,191	1,368	1,166	1,295	1,357	1,270	1,656	1,038	1,021	971	791	14,313
	상해교사	0	2	0	1	1	0	0	0	0	0	0	0	4
	상해치사	9	7	11	5	5	7	12	6	11	6	8	3	90
	존속상해	9	8	15	4	6	10	6	7	3	3	13	8	92
	존속상해치사	2	0	1	1	1	0	0	2	0	3	1	0	11
	존속중상해	0	0	0	0	0	0	1	0	0	0	0	0	1
	존속폭행	4	2	2	6	0	8	3	1	4	1	2	5	38
	존속폭행치상	0	1	0	1	1	0	0	0	1	0	1	0	5
	존속협박	2	2	0	3	0	0	2	0	0	2	2	0	13
	중상해	8	7	4	6	6	5	6	3	2	7	4	3	61
	특수상해	2	279	308	285	316	386	363	451	317	344	0	297	3,348
	특수존속상해	1	0	0	1	4	0	3	6	1	2	0	1	19
	특수존속폭행	2	2	0	1	1	2	4	2	2	0	0	0	16
	특수존속협박	1	4	1	4	2	5	3	3	3	1	2	0	29
	특수중상해	0	1	1	0	0	0	1	0	0	1	3	0	7
	특수폭행	159	146	156	104	143	168	149	218	134	128	118	135	1,758
	특수폭행치사	0	0	0	0	0	0	0	0	0	1	0	0	1
	특수폭행치상	0	3	1	2	6	4	5	4	3	5	2	1	36
	특수협박	188	195	196	182	220	244	224	296	180	189	167	141	2,422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범죄등)	0	0	0	0	1	0	0	0	0	0	0	0	1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	5	4	4	2	4	9	3	7	8	1	2	1	50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폭행등)	10	5	7	5	6	13	11	3	5	6	5	6	82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12	13	28	14	9	14	21	20	10	10	11	5	167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89	71	92	70	65	69	61	59	58	63	52	48	797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232	200	243	222	258	282	252	361	240	216	234	154	2,89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교사	0	0	0	1	0	2	0	1	1	0	1	0	6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존속상해)	3	0	0	0	0	0	0	0	0	0	1	0	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	79	64	100	92	96	108	76	127	93	70	59	64	1,028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협박)	7	2	4	2	9	7	3	15	6	5	12	14	86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7	0	5	0	0	0	0	1	0	0	0	0	13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단체등의공동폭행)	0	0	2	0	0	0	0	2	0	0	0	0	4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0	0	1	0	0	0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0	0	1	0	0	0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상해)	2	2	1	0	0	1	1	1	5	3	0	2	18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존속폭행)	0	1	0	0	0	0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집단·흉기등상해)	0	0	0	0	0	1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특수상해)	0	0	1	0	0	0	0	0	1	0	0	0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특수폭행)	0	0	0	0	0	0	1	1	0	0	0	0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폭행)	0	1	1	0	1	3	1	2	0	3	1	2	15
	폭력행위처벌법위반(야간·공동상해)	0	0	0	0	0	0	0	0	0	0	1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212	126	94	42	45	40	27	33	16	14	19	5	673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4	2	1	0	1	1	3	0	0	1	13	27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10	4	3	0	2	1	1	0	0	1	0	0	22
	폭행	612	661	709	624	737	792	793	966	643	582	485	533	8,137
	폭행교사	0	0	0	0	0	1	0	0	1	0	0	0	2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폭행치사	5	2	8	3	6	3	6	7	2	4	3	1	50
	폭행치상	28	27	33	24	35	32	27	46	40	26	28	21	367
	협박	98	111	108	95	92	110	105	140	77	69	77	46	1,128
	합계	**2,997**	**3,161**	**3,528**	**2,978**	**3,379**	**3,696**	**3,455**	**4,463**	**2,919**	**2,791**	**2,295**	**2,305**	**37,967**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002	985	987	735	821	743	520	392	175	120	104	48	6,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0	0	0	0	3	62	120	184	143	149	165	168	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0	0	0	1	10	115	261	500	389	426	419	490	2,61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422	418	445	338	336	293	229	214	95	81	47	37	2,955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교사	0	1	0	0	0	0	0	0	0	0	0	0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	0	0	0	0	0	2	5	10	10	10	14	7	58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0	0	0	0	14	75	130	215	172	216	197	183	1,202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	0	0	0	0	1	5	2	6	3	6	7	5	35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282	242	280	296	345	277	195	173	98	75	51	49	2,363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0	0	0	1	11	93	200	294	220	247	204	240	1,510
	합계	**1,706**	**1,646**	**1,712**	**1,371**	**1,541**	**1,665**	**1,662**	**1,988**	**1,305**	**1,330**	**1,208**	**1,227**	**18,361**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9	23	98	158	90	202	141	189	157	99	88	29	1,2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2	0	0	0	0	0	0	0	0	0	2	0	4
	합계	**11**	**23**	**98**	**158**	**90**	**202**	**141**	**189**	**157**	**99**	**90**	**29**	**1,287**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127	108	168	96	96	145	127	140	102	137	133	86	1,465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3	6	0	14	5	8	6	4	0	6	8	2	62
	특정범죄가중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1	21	17	14	12	19	17	61	41	15	18	12	258
	합계	**141**	**135**	**185**	**124**	**113**	**172**	**150**	**205**	**143**	**158**	**159**	**100**	**1,785**
공갈범죄	공갈	30	35	38	37	49	52	42	59	39	33	37	24	475
	상습공갈	5	3	0	2	2	1	0	2	0	4	3	0	22
	특수공갈	1	1	2	2	3	0	1	1	0	2	7	1	21
	특정경제범죄법위반(공갈)	0	0	0	1	0	0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49	34	65	21	27	46	30	39	48	35	50	23	467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공갈)	0	0	0	0	0	1	0	2	0	1	0	0	4
	폭력행위처벌법위반(야간·공동공갈)	0	0	1	0	0	0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공갈)	0	0	0	0	0	0	0	2	0	0	0	0	2
	합계	**85**	**73**	**106**	**63**	**81**	**100**	**73**	**105**	**87**	**75**	**97**	**48**	**993**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0	0	0	1	0	1	1	1	0	1	0	0	5
	공용자동차방화	0	1	0	0	0	0	0	0	0	0	0	0	1
	방화연소	0	0	0	0	0	0	0	0	1	0	0	0	1
	산림보호법위반	0	0	1	0	1	1	0	0	0	0	0	0	3
	일반건조물방화	3	4	9	4	6	4	2	7	3	1	1	2	46
	일반건조물방화교사	1	0	0	0	1	0	0	0	0	0	0	0	2
	일반물건방화	9	6	6	8	4	6	6	4	12	6	7	5	79
	일반선박방화	0	0	0	0	0	0	0	0	1	0	0	0	1
	일반자동차방화	3	2	1	3	2	3	1	2	1	1	0	1	20
	현존건조물방화	7	1	1	1	4	5	1	2	1	1	1	2	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0	0	0	0	0	0	0	0	0	1	0	0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2	0	1	0	1	1	1	1	0	1	0	0	8
	현존자동차방화	0	0	0	0	0	1	0	0	0	0	0	0	1
	현주건조물방화	17	11	13	12	5	14	9	14	10	10	8	13	136
	현주건조물방화교사	0	0	0	1	0	0	0	0	0	0	0	0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0	0	0	0	0	1	0	0	1	0	2	1	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2	2	2	1	0	0	2	3	1	1	1	1	16
	합계	**44**	**27**	**34**	**31**	**24**	**37**	**23**	**34**	**31**	**23**	**20**	**25**	**353**
전체		5,145	5,240	5,856	4,867	5,402	6,043	5,678	7,226	4,817	4,601	4,114	3,844	62,833

(4) 제4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21	32	42	17	37	57	35	39	45	30	21	18	394
	배임증재	8	18	30	17	20	31	16	12	31	21	12	4	220
	합계	**29**	**50**	**72**	**34**	**57**	**88**	**51**	**51**	**76**	**51**	**33**	**22**	**614**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66	55	68	53	73	70	80	60	64	65	53	50	757
	합계	**66**	**55**	**68**	**53**	**73**	**70**	**80**	**60**	**64**	**65**	**53**	**50**	**757**
성매매범죄	성매매처벌법위반	16	11	12	11	6	8	11	7	9	12	8	4	115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강요등)	2	7	1	0	1	4	0	1	3	1	0	0	20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295	246	274	252	269	290	358	437	313	312	317	306	3,669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교사	0	0	1	0	0	0	0	1	0	0	0	0	2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요행위등)	8	5	4	3	8	5	10	5	5	10	14	3	80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23	13	27	16	33	14	11	31	23	36	21	23	271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7	5	12	20	22	9	9	25	6	23	11	15	164
	합계	**351**	**287**	**331**	**302**	**339**	**330**	**399**	**507**	**359**	**394**	**371**	**351**	**4,32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감금	12	10	3	10	10	3	7	18	11	12	11	8	115
	감금치상	4	2	2	5	2	3	4	5	2	6	6	4	45
	노인복지법위반	0	1	2	3	1	0	2	2	0	0	1	1	13
	아동복지법위반	9	10	4	10	10	17	12	18	9	3	15	12	12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1	0	2	3	1	1	0	1	1	0	2	1	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적학대등)	0	0	0	0	0	1	0	0	0	0	0	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	1	0	2	5	2	4	5	3	3	1	9	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1	0	0	0	0	2	1	1	0	0	0	1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3	10	12	13	13	14	13	23	15	12	18	15	17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0	0	0	0	1	0	0	0	0	1	0	0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상해)	2	0	0	1	0	0	0	0	0	0	0	0	3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학대)	0	0	0	0	0	0	0	0	0	0	2	0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10	3	6	3	2	4	2	5	1	5	5	5	5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	0	0	1	0	0	0	1	0	0	1	0	4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1	2	0	0	3	3	0	1	2	2	1	0	15
	영아유기	1	2	2	2	2	1	2	1	0	0	0	1	14
	영아유기치사	0	0	1	0	0	0	0	0	0	0	0	0	1
	유기	1	0	1	0	0	0	0	0	0	0	0	0	2
	유기치사	1	0	1	0	0	0	0	0	1	0	0	1	4
	존속유기	0	0	0	0	0	0	0	0	0	0	1	0	1
	존속학대	0	0	0	0	0	1	0	0	0	0	0	0	1
	중감금	0	0	0	0	1	0	1	3	0	0	1	0	6
	중감금치상	0	1	0	0	2	2	1	0	1	1	1	1	10
	청소년보호법위반	79	96	96	51	65	66	67	100	53	58	48	66	845
	체포	0	0	0	0	0	0	0	0	0	0	0	1	1
	체포치상	0	0	0	0	0	0	0	1	0	0	0	0	1
	특수감금	8	6	7	7	9	1	4	3	3	4	0	17	69
	특수감금치상	0	0	2	1	0	0	0	0	1	1	1	0	6
	특수존속감금	0	0	0	0	0	0	0	1	0	0	0	0	1
	특수중감금	0	1	1	0	0	0	0	0	0	5	0	0	7
	특수중감금치상	0	0	0	2	0	0	0	1	0	0	0	0	3
	특수체포	0	0	1	0	0	0	0	0	0	0	0	0	1
	특수체포치상	0	1	1	0	0	0	0	0	0	0	0	0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	10	13	16	13	22	19	14	7	16	10	7	5	15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교사	0	0	0	0	1	0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존속감금)	2	0	0	0	0	0	0	0	0	0	0	0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체포)	0	0	0	0	1	0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감금)	1	1	0	0	0	0	0	0	0	0	0	0	2
	학대	0	0	8	0	0	0	0	0	0	0	0	0	8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학대치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합계	**159**	**160**	**168**	**127**	**151**	**141**	**134**	**197**	**119**	**123**	**122**	**148**	**1,749**
장물범죄	상습장물취득	0	4	0	0	0	0	5	3	3	1	3	0	19
	장물보관	3	5	2	2	1	5	1	2	3	0	3	3	30
	장물알선	4	4	5	5	4	2	10	8	9	0	2	3	56
	장물양도	2	1	0	0	0	0	0	0	0	0	0	0	3
	장물운반	5	3	4	2	0	1	1	2	4	3	2	2	29
	장물취득	46	27	68	43	43	50	36	35	23	29	32	19	451
	장물취득교사	0	0	1	0	0	0	0	0	0	0	0	0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장물)	0	0	0	0	0	0	0	1	0	0	0	0	1
	합계	**60**	**44**	**80**	**52**	**48**	**58**	**53**	**51**	**42**	**33**	**42**	**27**	**590**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	7	5	5	10	5	7	10	9	7	5	4	6	80
	강제집행면탈	15	22	27	14	31	26	17	19	15	13	15	7	221
	권리행사방해	65	58	65	55	58	63	74	97	51	43	46	48	723
	권리행사방해교사	0	0	0	0	0	0	0	0	1	0	0	0	1
	특수강요	0	0	1	0	0	1	0	0	0	0	0	0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1	2	8	1	1	0	7	0	6	6	1	0	33
	합계	**88**	**87**	**106**	**80**	**95**	**97**	**108**	**125**	**80**	**67**	**66**	**61**	**1,060**
업무방해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36	41	68	39	51	52	27	66	45	57	53	24	559
	경매방해	12	14	6	9	9	8	6	15	3	6	9	5	102
	업무방해	456	459	589	533	654	662	559	771	469	468	524	359	6,503
	업무방해교사	1	0	0	0	0	0	0	1	3	2	4	1	12
	입찰방해	11	1	3	2	18	42	36	14	6	26	10	11	180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0	0	0	0	1	0	0	0	0	0	0	1	2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0	0	0	0	0	0	0	1	0	1	0	0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3	0	2	4	4	0	1	0	0	5	6	5	3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교사	0	0	0	0	1	0	0	0	0	0	1	0	2
	합계	**519**	**515**	**668**	**587**	**738**	**764**	**629**	**868**	**526**	**565**	**607**	**406**	**7,392**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손괴범죄	문서손괴	4	3	3	1	5	1	3	1	0	7	4	2	34
	문서손괴교사	0	1	0	0	0	0	0	0	0	0	0	0	1
	손괴	0	0	0	0	0	0	0	1	1	0	0	0	2
	재물손괴	155	168	191	137	183	221	247	309	209	198	186	203	2,407
	재물손괴교사	1	1	1	0	1	0	0	0	0	2	0	0	6
	재물손괴치상	1	0	0	0	0	0	0	0	0	0	1	2	4
	전자기록등손괴	0	1	1	0	0	0	0	1	0	1	0	0	4
	중손괴	0	0	0	0	0	0	0	0	0	0	0	1	1
	특수공익건조물파괴	0	0	0	0	0	0	1	0	0	0	0	0	1
	특수손괴	2	1	0	1	1	0	0	48	0	0	0	0	53
	특수재물손괴	40	46	33	37	47	56	49	77	38	45	25	26	519
	특수재물손괴교사	0	0	0	0	0	0	0	0	0	1	1	0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	9	39	12	16	15	16	18	36	10	14	14	6	205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재물손괴등)교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재물손괴등)	0	0	0	0	0	0	0	2	0	0	0	0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특수재물손괴등)	0	0	0	0	0	0	0	3	0	0	1	0	4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	0	0	0	0	0	1	3	0	0	0	26	32
	합계	**214**	**260**	**241**	**192**	**252**	**295**	**319**	**481**	**258**	**268**	**232**	**266**	**3,278**
사행성·게임물범죄	게임산업법위반	228	180	233	195	164	187	184	226	140	141	196	128	2,202
	경륜경정법위반	0	1	0	0	0	3	0	0	0	0	0	0	4
	관광진흥법위반	1	2	0	3	0	2	16	8	11	3	3	2	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6	10	8	4	6	8	2	25	16	5	6	7	1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19	21	53	7	18	25	17	39	35	40	92	26	3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101	105	0	0	0	0	0	0	0	0	0	0	206
	도박개장	19	18	13	31	9	18	10	6	5	9	10	2	150
	도박공간개설	59	54	55	61	51	66	90	76	53	13	21	28	627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도박장소개설	14	18	19	15	26	58	33	50	25	40	24	17	339
	사행행위규제법위반	41	19	45	37	29	30	38	50	20	15	11	20	355
	한국마사회법위반	23	2	5	18	7	9	12	5	0	3	3	3	9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4	7	10	6	1	10	3	0	1	1	3	0	4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5	4	0	4	0	0	0	0	0	0	0	0	13
	합계	**520**	**441**	**441**	**381**	**311**	**416**	**405**	**485**	**306**	**270**	**369**	**233**	4,578
전체		2,006	1,899	2,175	1,808	2,064	2,259	2,178	2,825	1,830	1,836	1,895	1,564	24,339

(5) 제5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범죄군	세부죄명	2016년						2017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근로기준법위반	8	31	67	119	197	203	276	276	202	1,379
	선원법위반	0	0	0	1	0	2	1	2	1	7
	직업안정법위반	1	2	17	8	12	8	5	2	11	66
	최저임금법위반	0	0	0	1	0	2	1	0	0	4
	퇴직급여법위반	1	45	77	115	223	93	71	77	127	829
	파견법위반	0	0	1	1	2	2	1	4	0	11
	합계	**10**	**78**	**162**	**245**	**434**	**310**	**355**	**361**	**341**	2,296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	0	3	7	12	19	20	13	21	2	97
	합계	**0**	**3**	**7**	**12**	**19**	**20**	**13**	**21**	**2**	**97**
과실치사상범죄	과실치사	0	0	0	1	0	0	0	1	0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15	25	26	43	23	34	26	29	222
	업무상과실치사	0	1	13	19	38	15	36	24	19	165
	업무상과실치상	0	4	16	24	28	28	28	18	14	160
	중과실치상	0	0	0	0	0	0	1	0	0	1
	합계	**1**	**20**	**54**	**70**	**109**	**66**	**99**	**69**	**62**	550
전체		11	101	223	327	562	396	467	451	405	2,943

다. 법원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6. 4. 1. ~ 2017. 3. 31.)에 조사된 제1, 2, 3, 4, 5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법원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1기 설정범죄							전체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 · 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서울중앙	수	23	153	557	53	632	147	97	1,662
	비율	1.4	9.2	33.5	3.2	38.0	8.8	5.8	100.0
서울동부	수	17	14	319	20	218	56	61	705
	비율	2.4	2.0	45.2	2.8	30.9	7.9	8.7	100.0
서울남부	수	25	14	328	28	256	42	72	765
	비율	3.3	1.8	42.9	3.7	33.5	5.5	9.4	100.0
서울북부	수	23	43	411	36	192	58	66	829
	비율	2.8	5.2	49.6	4.3	23.2	7.0	8.0	100.0
서울서부	수	11	20	281	17	144	23	40	536
	비율	2.1	3.7	52.4	3.2	26.9	4.3	7.5	100.0
의정부	수	42	25	516	37	355	54	91	1,120
	비율	3.8	2.2	46.1	3.3	31.7	4.8	8.1	100.0
인 천	수	55	45	666	72	547	81	93	1,559
	비율	3.5	2.9	42.7	4.6	35.1	5.2	6.0	100.0
수원	수	115	73	1,315	92	831	175	168	2,769
	비율	4.2	2.6	47.5	3.3	30.0	6.3	6.1	100.0
춘천	수	18	13	279	16	142	29	47	544
	비율	3.3	2.4	51.3	2.9	26.1	5.3	8.6	100.0
대전	수	59	34	592	59	365	69	97	1,275
	비율	4.6	2.7	46.4	4.6	28.6	5.4	7.6	100.0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1기 설정범죄							전체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 · 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청주	수	23	20	224	23	133	13	40	476
	비율	4.8	4.2	47.1	4.8	27.9	2.7	8.4	100.0
대구	수	59	70	753	93	468	146	140	1,729
	비율	3.4	4.0	43.6	5.4	27.1	8.4	8.1	100.0
부산	수	56	78	424	77	416	169	177	1,397
	비율	4.0	5.6	30.4	5.5	29.8	12.1	12.7	100.0
울산	수	12	12	299	15	145	42	43	568
	비율	2.1	2.1	52.6	2.6	25.5	7.4	7.6	100.0
창원	수	41	70	389	30	317	51	71	969
	비율	4.2	7.2	40.1	3.1	32.7	5.3	7.3	100.0
광주	수	44	108	670	49	324	71	81	1,347
	비율	3.3	8.0	49.7	3.6	24.1	5.3	6.0	100.0
전주	수	19	21	262	20	184	27	61	594
	비율	3.2	3.5	44.1	3.4	31.0	4.5	10.3	100.0
제주	수	12	8	117	10	62	16	15	240
	비율	5.0	3.3	48.8	4.2	25.8	6.7	6.3	100.0
전체	**수**	**654**	**821**	**8,402**	**747**	**5,731**	**1,269**	**1,460**	**19,084**
	비율	**3.4**	**4.3**	**44.0**	**3.9**	**30.0**	**6.6**	**7.7**	**100**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2기 설정범죄								전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서울중앙	수	5	4,473	878	111	222	582	244	693	7,208
	비율	0.1	62.1	12.2	1.5	3.1	8.1	3.4	9.6	100.0
서울동부	수	0	1,671	489	30	79	342	108	82	2,801
	비율	0.0	59.7	17.5	1.1	2.8	12.2	3.9	2.9	100.0
서울남부	수	4	2,195	574	38	74	554	117	184	3,740
	비율	0.1	58.7	15.3	1.0	2.0	14.8	3.1	4.9	100.0
서울북부	수	2	1,876	579	80	81	495	132	197	3,442
	비율	0.1	54.5	16.8	2.3	2.4	14.4	3.8	5.7	100.0
서울서부	수	2	1,335	359	15	58	362	330	112	2,573
	비율	0.1	51.9	14.0	0.6	2.3	14.1	12.8	4.4	100.0
의정부	수	6	2,961	765	69	130	689	217	352	5,189
	비율	0.1	57.1	14.7	1.3	2.5	13.3	4.2	6.8	100.0
인천	수	3	4,110	1,153	109	164	941	248	687	7,415
	비율	0.0	55.4	15.5	1.5	2.2	12.7	3.3	9.3	100.0
수원	수	15	5,976	1,881	179	276	1,530	432	824	11,113
	비율	0.1	53.8	16.9	1.6	2.5	13.8	3.9	7.4	100.0
춘천	수	3	1,028	410	43	41	310	75	149	2,059
	비율	0.1	49.9	19.9	2.1	2.0	15.1	3.6	7.2	100.0
대전	수	5	2,857	958	83	132	699	315	332	5,381
	비율	0.1	53.1	17.8	1.5	2.5	13.0	5.9	6.2	100.0
청주	수	0	1,157	364	38	55	356	56	88	2,114
	비율	0.0	54.7	17.2	1.8	2.6	16.8	2.6	4.2	100.0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2기 설정범죄								전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대구	수	0	4,066	1,415	89	183	1,083	290	425	7,551
	비율	0.0	53.8	18.7	1.2	2.4	14.3	3.8	5.6	100.0
부산	수	12	3,795	1,143	95	228	923	322	628	7,146
	비율	0.2	53.1	16.0	1.3	3.2	12.9	4.5	8.8	100.0
울산	수	3	1,120	398	28	55	435	56	105	2,200
	비율	0.1	50.9	18.1	1.3	2.5	19.8	2.5	4.8	100.0
창원	수	3	2,107	760	42	150	807	160	400	4,429
	비율	0.1	47.6	17.2	0.9	3.4	18.2	3.6	9.0	100.0
광주	수	5	3,041	1,090	78	166	507	242	214	5,343
	비율	0.1	56.9	20.4	1.5	3.1	9.5	4.5	4.0	100.0
전주	수	3	1,279	489	21	77	219	150	64	2,302
	비율	0.1	55.6	21.2	0.9	3.3	9.5	6.5	2.8	100.0
제주	수	0	557	238	17	58	322	67	24	1,283
	비율	0.0	43.4	18.6	1.3	4.5	25.1	5.2	1.9	100.0
전체	**수**	**71**	**45,604**	**13,943**	**1,165**	**2,229**	**11,156**	**3,561**	**5,560**	**83,289**
	비율	**0.1**	**54.8**	**16.7**	**1.4**	**2.7**	**13.4**	**4.3**	**6.7**	**100.0**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3기 설정범죄								전체
		증권·금융 범죄	지식재산권 범죄	폭력 범죄	교통 범죄	선거 범죄	조세 범죄	공갈 범죄	방화 범죄	
서울중앙	수	116	285	2,166	708	36	117	100	10	3,538
	비율	3.3	8.1	61.2	20.0	1.0	3.3	2.8	0.3	100.0
서울동부	수	3	66	1,371	468	37	34	44	5	2,028
	비율	0.1	3.3	67.6	23.1	1.8	1.7	2.2	0.2	100.0
서울남부	수	229	48	1,711	564	49	93	14	15	2,723
	비율	8.4	1.8	62.8	20.7	1.8	3.4	0.5	0.6	100.0
서울북부	수	17	38	1,926	563	38	61	35	25	2,703
	비율	0.6	1.4	71.3	20.8	1.4	2.3	1.3	0.9	100.0
서울서부	수	8	42	1,007	389	23	42	13	6	1,530
	비율	0.5	2.7	65.8	25.4	1.5	2.7	0.8	0.4	100.0
의정부	수	8	212	2,146	1,125	46	105	46	26	3,714
	비율	0.2	5.7	57.8	30.3	1.2	2.8	1.2	0.7	100.0
인천	수	31	151	2,887	1,384	59	146	56	36	4,750
	비율	0.7	3.2	60.8	29.1	1.2	3.1	1.2	0.8	100.0
수원	수	40	182	4,711	2,582	126	234	133	39	8,047
	비율	0.5	2.3	58.5	32.1	1.6	2.9	1.7	0.5	100.0
춘천	수	2	16	1,414	735	38	27	23	14	2,269
	비율	0.1	0.7	62.3	32.4	1.7	1.2	1.0	0.6	100.0
대전	수	11	58	2,537	1,819	90	181	102	30	4,828
	비율	0.2	1.2	52.5	37.7	1.9	3.7	2.1	0.6	100.0
청주	수	3	9	968	659	63	51	31	16	1,800
	비율	0.2	0.5	53.8	36.6	3.5	2.8	1.7	0.9	100.0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3기 설정범죄								전체
		증권·금융 범죄	지식재산권 범죄	폭력 범죄	교통 범죄	선거 범죄	조세 범죄	공갈 범죄	방화 범죄	
대구	수	44	93	3,929	2,153	150	183	91	37	6,680
	비율	0.7	1.4	58.8	32.2	2.2	2.7	1.4	0.6	100.0
부산	수	29	169	2,951	905	62	193	115	14	4,438
	비율	0.7	3.8	66.5	20.4	1.4	4.3	2.6	0.3	100.0
울산	수	16	21	1,198	544	61	33	24	7	1,904
	비율	0.8	1.1	62.9	28.6	3.2	1.7	1.3	0.4	100.0
창원	수	15	29	2,460	1,019	102	121	51	19	3,816
	비율	0.4	0.8	64.5	26.7	2.7	3.2	1.3	0.5	100.0
광주	수	26	43	2,784	1,562	133	123	82	23	4,776
	비율	0.5	0.9	58.3	32.7	2.8	2.6	1.7	0.5	100.0
전주	수	2	20	1,147	799	156	32	27	23	2,206
	비율	0.1	0.9	52	36.2	7.1	1.5	1.2	1.0	100.0
제주	수	2	3	654	383	18	9	6	8	1,083
	비율	0.2	0.3	60.4	35.4	1.7	0.8	0.6	0.7	100.0
전체	**수**	**602**	**1,485**	**37,967**	**18,361**	**1,287**	**1,785**	**993**	**353**	**62,833**
	비율	**1.0**	**2.4**	**60.4**	**29.2**	**2.0**	**2.8**	**1.6**	**0.6**	**100.0**

(4) 제4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4기 설정범죄									전체
		배임수증재 범죄	변호사법 위반범죄	성매매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장물 범죄	권리행사 방해범죄	업무방해 범죄	손괴 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서울중앙	수	106	272	878	76	57	73	495	149	350	2,456
	비율	4.3	11.1	35.7	3.1	2.3	3.0	20.2	6.1	14.3	100.0
서울동부	수	5	14	88	79	20	23	257	131	70	687
	비율	0.7	2.0	12.8	11.5	2.9	3.3	37.4	19.1	10.2	100.0
서울남부	수	35	35	153	92	18	32	461	178	119	1,123
	비율	3.1	3.1	13.6	8.2	1.6	2.8	41.1	15.9	10.6	100.0
서울북부	수	16	25	125	57	32	49	403	148	84	939
	비율	1.7	2.7	13.3	6.1	3.4	5.2	42.9	15.8	8.9	100.0
서울서부	수	11	7	81	28	14	27	171	77	39	455
	비율	2.4	1.5	17.8	6.2	3.1	5.9	37.6	16.9	8.6	100.0
의정부	수	18	26	311	103	27	99	513	145	236	1,478
	비율	1.2	1.8	21.0	7.0	1.8	6.7	34.7	9.8	16.0	100.0
인천	수	105	69	372	148	89	119	654	248	370	2,174
	비율	4.8	3.2	17.1	6.8	4.1	5.5	30.1	11.4	17.0	100.0
수원	수	37	129	674	243	88	159	1,043	420	456	3,249
	비율	1.1	4.0	20.7	7.5	2.7	4.9	32.1	12.9	14.0	100.0
춘천	수	2	2	44	79	3	35	175	169	141	650
	비율	0.3	0.3	6.8	12.2	0.5	5.4	26.9	26	21.7	100.0
대전	수	19	28	289	131	30	64	307	285	317	1,470
	비율	1.3	1.9	19.7	8.9	2.0	4.4	20.9	19.4	21.6	100.0
청주	수	10	4	72	65	4	45	155	82	142	579
	비율	1.7	0.7	12.4	11.2	0.7	7.8	26.8	14.2	24.5	100.0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4기 설정범죄									전체
		배임수증재 범죄	변호사법 위반범죄	성매매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장물 범죄	권리행사 방해범죄	업무방해 범죄	손괴 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구	수	40	12	301	195	73	82	579	315	540	2,137
	비율	1.9	0.6	14.1	9.1	3.4	3.8	27.1	14.7	25.3	100.0
부산	수	89	62	232	84	83	62	673	190	515	1,990
	비율	4.5	3.1	11.7	4.2	4.2	3.1	33.8	9.5	25.9	100.0
울산	수	29	23	129	60	10	23	350	103	335	1,062
	비율	2.7	2.2	12.1	5.6	0.9	2.2	33.0	9.7	31.5	100.0
창원	수	30	18	165	96	8	50	370	208	322	1,267
	비율	2.4	1.4	13.0	7.6	0.6	3.9	29.2	16.4	25.4	100.0
광주	수	42	23	234	135	17	76	437	236	369	1,569
	비율	2.7	1.5	14.9	8.6	1.1	4.8	27.9	15.0	23.5	100.0
전주	수	13	8	107	50	11	37	197	112	111	646
	비율	2.0	1.2	16.6	7.7	1.7	5.7	30.5	17.3	17.2	100.0
제주	수	7	0	66	28	6	5	152	82	62	408
	비율	1.7	0.0	16.2	6.9	1.5	1.2	37.3	20.1	15.2	100.0
전체	**수**	**614**	**757**	**4,321**	**1,749**	**590**	**1,060**	**7,392**	**3,278**	**4,578**	**24,339**
	비율	**2.5**	**3.1**	**17.8**	**7.2**	**2.4**	**4.4**	**30.4**	**13.5**	**18.8**	**100.0**

(5) 제5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5기 설정범죄			전체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	
서울중앙	수	182	2	59	243
	비율	74.9	0.8	24.3	100.0
서울동부	수	74	1	2	77
	비율	96.1	1.3	2.6	100.0
서울남부	수	113	1	5	119
	비율	95.0	0.8	4.2	100.0
서울북부	수	48	1	11	60
	비율	80.0	1.7	18.3	100.0
서울서부	수	46	0	5	51
	비율	90.2	0.0	9.8	100.0
의정부	수	195	3	37	235
	비율	83.0	1.3	15.7	100.0
인천	수	243	3	32	278
	비율	87.4	1.1	11.5	100.0
수원	수	299	5	76	380
	비율	78.7	1.3	20.0	100.0
춘천	수	35	3	24	62
	비율	56.5	4.8	38.7	100.0
대전	수	94	13	62	169
	비율	55.6	7.7	36.7	100.0
청주	수	43	2	9	54
	비율	79.6	3.7	16.7	100.0

(단위 : 명, %)

지방법원		제5기 설정범죄			전체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대구	수	184	24	59	267
	비율	68.9	9.0	22.1	100.0
부산	수	157	26	56	239
	비율	65.7	10.9	23.4	100.0
울산	수	92	2	16	110
	비율	83.6	1.8	14.5	100.0
창원	수	264	1	27	292
	비율	90.4	0.3	9.2	100.0
광주	수	143	7	49	199
	비율	71.9	3.5	24.6	100.0
전주	수	63	3	18	84
	비율	75.0	3.6	21.4	100.0
제주	수	21	0	3	24
	비율	87.5	0.0	12.5	100.0
전체	**수**	**2,296**	**97**	**550**	**2,943**
	비율	**78.0**	**3.3**	**18.7**	**100.0**

Ⅱ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1. 개요

운영지원단에 소속된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가 되는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지원단 본부 및 전국 7개 법원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양형자료분석관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양형자료조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관 워크숍 및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규 전입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주제발표와 의견 교환, 자유토론을 통해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의 효율성·통일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은 분석관들로 하여금 분석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은 물론, 양형자료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분석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 실시 내역

(1) 일시 · 장소

- ▶ 일시 : 2016. 11. 11.(금) ~ 11. 12.(토)
- ▶ 장소 : Kobaco 남한강 연수원(경기도 양평)

(2) 참석

- ▶ 운영지원단장
- ▶ 기획운영과 직원(과장 포함 5명)
-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 자료조사과 직원(과장 포함 2명)
- ▶ 통계분석과 직원(과장 포함 4명)

(3) 주제 발표

주 제	발표자
지적재산범죄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실무 검토	김웅기 분석관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사기사건의 운영점검에 대한 소고	윤태수 분석관
사행성·게임물 관련 동종유형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운영점검 검토와 유형과 단계별 상승에 따른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고지훈 분석관

3. 양형자료분석관 정기 토론회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나. 실시 내역

(1) 2016년 2/4분기 정기 토론회

(가) 일시 · 장소

- ▶ 일시 : 2016. 5. 26.(목) 14:00 ~ 17:30
- ▶ 장소 : 대법원 본관 1601호

(나) 참석대상

-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서무행정관(이상 3명)

(다) 토론 내용

- ▶ 폭력범죄 운영점검에 대한 실무검토(성현준 분석관)
- ▶ 사기, 횡령·배임범죄의 구성요건 이해와 이득액 고찰(박동필 분석관)

(2) 2016년 4/4분기 정기 토론회

(가) 일시 · 장소

- ▶ 일시 : 2016. 12. 15.(목) 14:00 ~ 17:30
- ▶ 장소 : 대법원 본관 1601호

(나) 참석대상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서무행정관(이상 3명)

(다) 토론 내용

▶ 선거범죄 운영점검과 관련한 양형인자의 적용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서동제 분석관)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정방안에 관한 고찰(안경태 분석관)

4.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신규 분석관 및 직원들로 하여금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실시 내역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7. 1. 4.(수) ~ 1. 6.(금)

▶ 장소 : 법원공무원교육원 213호 강의실 및 315호 멀티전산실

(2) 교육대상 및 교육지원

▶ 교육대상 : 전입 양형자료분석관 5명, 통계분석과 과장 외 1명,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직원 4명

▶ 교육지원 : 양형자료분석관 7명

▶ 강사 : 운영지원단장 및 사법지원심의관 1명, 자료조사과장, 양형자료분석관 4명,
통계분석과 행정관 1명

(3) 교육내용

▶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업무 계획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방법

- 양형자료조사의 의미 및 필요성

-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 양형자료조사표의 작성 및 신양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실습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개요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표 작성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 프로그램 사용방법 실습